

## 제 4 부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A.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준비활동

### 1. 유엔 세계인권대회 제4차 준비위원회 참가(참관기)

천정배(「공대위」집행위원장)

나는 지난 4월 19일부터 3주일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제4차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보통 "4th PrepCom"이라 불림)의 첫 2주 동안의 회의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Follow-Up) 참관단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회의의 진행을 지켜보고 돌아왔다.

준비위원회는 유엔이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엔 전체 회원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한 것인데 이번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제4차이자 마지막 회의로서 6월의 세계인권대회에서 참가국 정부들이 채택할 선언문 등 최종문서(final documents)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 것이었다. 지난 3월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가하였던 민간단체들이 세계인권대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활동을 준비, 조정하기 위하여 9인의 대표를 뽑아 구성한 위 조정위원회는 이번 준비위원회 회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정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이 위 회의를 참관하면서 최종문서의 초안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나도 위 회의를 참관하게 되었다.

위 회의에서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이 있는 민간단체만이 참관 및 발언을 하도록 허용되었다. 나는 타이의 방콕에 본부를 둔 아시안 컬처럴 포럼 온 디벨럽먼트(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 ACFOD) 및 캐나다의 오타와에 본부를 둔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다큐멘테이션 센터(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Internet)의 협조로 위 협의자격을 지닌 이 각 단체의 대표로 등록을 마치고 회의에 참관할 수 있었다. 위 회의의 기간 중 독일 보쿰에 거주하는 박희원, 이금운씨 부부와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장소영씨가 제네바까지 찾아와 나를 동행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 준비위원회 회의의 진행

4월 17일 오전 11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 제4차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오전에 유엔 사무차장(Under Secretary General; 인권 담당)이자 이번 세계인권대회의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인 이브라하마 팔(Ibrahima Fall)의 개막연설이 있은 뒤 모로코 대표인 와자지(Warzazi)여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절차적인 사안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최종문서에 대한 일반 토론(General Debate)에 들어갔으며 4월20일 및 4월21일의 각 오전, 오후,

4월21일 오전에도 일반 토론이 계속되었다. 이 때까지 회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일반토론은 각 정부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들의 대표들이 최종 문서의 내용이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차례로 발언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국가들의 발언 내용을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분류하여 그 스펙트럼을 만든다면, 그 한쪽 끝에는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 즉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개념이므로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대체로 서방 선진 국가들의 입장)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인권 문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타국의 인권상황을 평계 삼아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 등을 뜻하는 듯함)를 반대하고 각국의 주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중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이 위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나라들은 이 양국 사이의 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런 모습은 인권대회에서도 별반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인 주제네바 대표부의 김삼훈 대리대사는 4월21일 오후에 발언 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서방 선진국들의 입장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는 인권대회가 국제인권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편성(Universality), 객관성(Objectivity) 및 무차별성(Non-selectivity)의 원칙들을 제고시킴에 있어 관련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 나라에 있어 사회적·문화적·종교적·인종적 다양성때문에 인권개념의 해석 상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보편성의 원칙으로부터의 어떠한 퇴보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이중 기준(double standards)의 적용(똑같은 사태를 두고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어떤 나라에는 불이익을 가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을 뜻함)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의 중론은 한국 대표의 발언이 일본 및 사이프로스와 함께 아시아지역 국가 중 선진적 수준에 도달한 희귀한 예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조정위원회는 4월20일 오후 위 ACFOD 대표를 통해 Bangkok NGO 선언에 바탕을 두고 Bangkok 정부회의 선언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4월22일 오후부터는 전체 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가 열려 최종문서를 어떤 문건에 바탕을 두고 기초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시아의 예멘, 파키스탄, 중국, 아랍국가와 쿠바 등은 그 동안 개최된 지역회의(방콕, 산호세, 튜니스)의 선언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서구 국가들은 이브라히마 팔 사무총장이 “작업문서(Working Paper)”라고 이름을 붙여 만든 초안(유인 문서번호 A/CONF.157/PC/82)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자는 그 동안 지역회의에서 인권후진국들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어 작성된 것(다만, 지역 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음)임에 비해 후자는 민간단체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훌륭하다고 할 만큼 진보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 논쟁은 최종문서의 내용을 둘러싼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후 회의는 난항을 거듭해 산회를 반복하고 막후 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진 뒤 4월23일 밤 늦게 (정확히는 4월24일 새벽) 위 모든 문건을 바탕으로 삼으며 새로 제출되는 문건도 고려한다는 태협이 이루어졌다.

4월26일 오전 속개된 제2주째 회의에서는 최종문서의 전문(Preamble)에 대한 약간의 구체적 논의가 있었고 후반에는 39개국으로 기초위원회(drafting group)를 만들어 초안의 기초를 계속했으나 각 나라들의 입장이 맞서 큰 진전이 없었다.

또한 4월26일 오전 회의에서는 기초위원회의 토의에 민간단체 대표들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민간단체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체로 가장 선진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까닭에 그 대표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 회의에서 선진적 입장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결국 민간단체 대표를 하루 1시간씩 배석시키는 것으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키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4월30일 밤 늦게(정확히는 5월1일 새벽)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한 회의는 1주일 간 회기를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나는 당초 회의의 일정에 맞추어 여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연장된 회기 동안에는 참관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그 뒤 알게 된 바로는 위 연장된 회의에서 준비위원회는 미합의된 부분을 팔호 안에 써넣는 방식으로 수많은 팔호를 남긴 채 최종문서의 초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 민간단체들의 활동

이번 준비위원회 회의 기간 중에는 민간단체의 행사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참관하려 온 민간단체 대표들은 많지 않았다. 그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제네바에 상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100여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4월19일 오후 2:30 세계인권대회 민간공동기획 위원회(Joint Planning Committee; JPC) 주관으로 민간단체회의(OPEN NGO General Coordination Meeting)이 열린 이래 연일 회의가 열렸고 분야별 작업팀(working group)을 결성하는 등 준비위원회 및 그것에 참가한 정부 대표들을 설득키 위한 활동이 전개되는 듯 했으나 실제 지지부진하여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다. 다만 여성의 권리,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각 소모임 만이 긴밀히 움직여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조정위원회는 이브라히마 팔의 작업문서(Working Paper)에 대하여 방콕 민간단체 선언(Bangkok NGO Declaration)에 바탕을 둔 의견(comments)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민간단체들에게 전체 남측 국가 민간단체(South NGO) 모임을 주창해 공동 행동을 모색하였으며, 준비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대한 논평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우리는 대체로 가장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조정위원회는 둘째 주 중반 준비위원회의 진행 및 JPC 중심 NGO 활동의 부진에 실망을 느끼고 우리들 만으로 독자행동을 하기로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였다.

## 2.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비엔나 행사계획

### 가. 자료 홍보

한국 인권상황 개괄 책자(30쪽 분량), 국가보안법 책자(100쪽), 공대위 제안문 모음 책자등

을 현재의 정세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제작하여 배포하고, 공대위 참가단체들의 고유 사업에 대한 소개 및 각 부문별 인권 침해 자료집을 제작·수집하여 배포할 예정임.

#### 나. 본회의 참가 활동

본 회의에 참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본 회의 진전 사항을 청취하고, 사전에 준비한 발표문에 대한 발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각국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간단체의 공동의 요구, 한국 공대위의 요구가 본회의에 채택될 수 있게하는 로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 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법률에 관한 심포지움

이 행사는 지난 4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지역 준비회의 기간중에 한국 공대위가 제안하여 채택된 아시아 민간단체 공동주최하며 한국 공대위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 일 시 : 6월 16일 ~ 18일 중 하루
- 주제 발표 : 전세계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의 문제
- 주제 발표자 : Mr. K. S. Venkatesvaran  
(아일랜드 벨파스트 여왕립대학 법학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전산센타)
- 사회자 : Edward J. Baker (하바드-엔칭연구소 부소장)
- 각국 사례 보고 : 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지아, 방글라데শ
- 질의 및 응답
- 공동 요구사항 및 결의문 채택
- 각 발제문 및 각국의 국가 안보법률에 관한 논문을 담은 책자의 발간
- 향후 국가안보를 이유로한 인권 침해 법률의 문제에 관한 국제 공동활동을 위한 간담회

#### 라. 정신대 문제

- 일 시 : 1993년 6월 16일
- 주 최 : 필리핀 군위안부문제대책위원회, 한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 오전 : - 강제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 (필리핀 · 남한 · 북한 피해자)
  - 한국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격 (정진성:한국정신대연구회 회장)
  -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 (이효재:한국정대협 공동대표)
  - 전쟁 중 저질러진 여성의 인권침해인 성노예  
(필리핀 군 위안부문제 대책위원회 코오디네이터)
  - 「필리핀 군 위안부문제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유엔 및 국제단체에 대한 건의  
(넬리아산초:「필리핀 군위안부문제대책위원회」 코오디네이터)
  - 질문과 답변
- 오후 : - 국제활동에 대한 보고

- 1)Mr. Uesugi Satoshi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타 사무국장)
  - 2)김영호 목사 (뉴욕 정신대대책협의회 대표)
  - 3)전옥순 (Los Angeles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
- 1)아시아에서 자행된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와 여성에 대한 차별  
(Mr. Etsuro Totaka : 일본인 변호사)
  - 2)제2차 세계대전때 아시아에서 자행된 강제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 (박원순 변호사)
  - 3)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변호사들의 역할  
(Abe Saburo :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 마. 노래 공연

각국 민간단체와의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그간 국내에서 인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려졌던 노래 10여곡을 선정하여 영문 가사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함께 부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로 준비되었다.

#### 바. 사진 전시회

한국의 인권 상황과 인권투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진을 50여점 준비하여 대회 전기간중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사. 비디오 상영

여성, 도시빈민, 노동, 반핵등 한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비디오를 준비하여 대회기간중 하루 1시간 가량의 상영회를 갖을 예정이다.

#### 아. 연대 활동

대표단중 연대활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국 민간단체들의 행사에 파견하고, 향후 한국 인권운동에서의 국제적 연대를 확보하기 위한 만남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 3. 참가를 위한 내부학습 및 토론 사항

\* 공대위 결성 초기에 조용환, 이대훈, 장소영, 전대진 등이 유엔 인권기구에 관련된 자료와 인권사상 및 법의 발달사를 중심으로 간단한 예비학습을 진행하였으나, 공대위 체계가

갖춰지고 집행위가 결성되면서 이 모임은 중단되었다.

\* 본격적인 학습과 토론은 비엔나대회 참각 직전 2차의 학습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이 학습모임의 취지와 참석자,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지 : 공대위의 비엔나 대표단이 되도록 공동의 입장을 가짐으로써 활동을 효과적으로 펴며, 이를 위해 사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

2) 참석자 : 비엔나회의 참석자 전원

3) 1차 학습모임

① 대표단의 활동목표와 자세, 역할 : 천정배 (민변)

발표문 : 「인권회의에 왜 가는가?」

토론내용 : - 세계인권운동에 참여

- 우리 인권운동의 일부

- 인권운동가들의 인식 발전과 경험축적

② 유엔에 대한 검토 : 조용환 (민변)

발표문 : 「유엔의 활동과 인권제도의 개선방향」

학습/토론내용 : - 기존 유엔활동의 성과와 한계

- 탈냉전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유엔의 위상

- 유엔개혁의 방향

- 유엔과 민간단체의 관계

③ 인권보호제도와 발전모델에 대한 검토 : 이대훈 (천주교인권위)

발표문 : 「인권보호제도와 발전모델에 대한 검토내용」

학습/토론내용 : - 발전(개발)과 인권의 관계 인식

- 유엔의 「발전」관계 문서들

- 국제법상 「발전의 권리」에 관한 쟁점들

- 발전모델과 세계체제 및 인권

- 발전모델과 국가-자본-노동 관계

- 앞으로의 과제

④ 한국인권상황 개관/변화된 정세와 인권 : 곽노현 (민주법연)

토론내용 : 신정부하에서 인권제도 및 상황의 문제점

4) 2차 학습모임

① 인권운동 국제연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발표문 : 「비엔나 국제 공동활동에 대한 원칙과 향후 인권관련 국제연대운동

에 대한 하나의 제안」

학습/토론내용 : - 인권관련 국제활동의 의의와 평가

- 한국인권운동에서 공대위가 갖는 의의

- 비엔나 공동활동의 원칙

- 향후 인권관련 국제연대운동에 대한 하나의 제안

(공대위 이후 상설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합의함)

② 세계주요 인권상황 : 김경남 (기독교교회협 인권위)

발표문 : 「세계 주요 인권상황」

학습/토론내용 : - 원주민의 권리

- 식민지 지배의 문제

- 이스라엘 점령지, 미얀마, 보스니아, 동티모르의 인권문제

- 유엔 안보리의 개편문제

③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공동 협의체에 대하여 : 혜진 (불교인권위)

발표문 : 「아시아지역 민간단체 공동 협의체에 대하여」

학습/토론내용 : - 민간협의체의 필요성, 현실, 과제, 논의과정 소개

④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정리 : 남규선 (민가협)

발표문 : 「벌거벗은 폭력 = 국가보안법」

⑤ 정신대문제 : 정진성 (정신대책협)

⑥ 비엔나 현지상황, 일정, 역할분담, 자세와 규율, 준비물 점검 : 이대훈, 노태훈

5) 기타 참고했던 자료들

- 이브라히마 팔(인권대회 사무총장)의 대회 선언문 초안

- Bangkok NGO Declaration on Human Rights

- 유엔 인권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 우리나라 노동자의 인권상황, 등.

## \* 토론자료 1 :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한 권고 및 요구사항

(발제 ; 조용환)

### 유엔에 대한 요구와 권고

#### 1. 유엔조직의 민주화

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검토할 것.

나. 안전보장이사회에 집중된 권한을 총회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특히 국제사회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세계 국가들과 그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피해국과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지 못한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도록 할 것.

#### 2. 인권제도의 재검토

가. 모든 유엔가입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과 그밖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약,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을 유보없이 비준하고 이미 선언한 유보를 철회하도록 할 것.

나. 인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감시하는 제도를 정비할 것. 특히 개인과 인권단체들의 개별적인 통보절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조약에 의한 인권기구들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것.

다. 유엔총회와 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감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것.

라. 유엔의 인권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5%로 늘이고 유엔인권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할 것.

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성폭력의 방지, 식민지 또는 피침략국의 해방, 원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

#### 3. 새로운 제도의 도입

가. 인권문제 특별판무관을 설치할 것.

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할 것.

다. 기본적인 인권조약들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과 인권단체들이 제소하고 이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상설 국제인권재판소를 설치할 것.

라. 유엔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와 인권의 관계 및 세계 각국의 국가안보법률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것.

#### 4.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권보장제도

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부간 인권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실현하도록 감독할 것.

나. 아시아 지역의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의 진상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

###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1. 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하면서 제한을 둔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

나. 여성차별 철폐조약을 비준 이후 남아 있는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차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라. 고문과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을 유보없이 비준할 것.

마. 전범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약을 유보없이 비준할 것.

바.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7호, 98호, 151호를 유보없이 비준할 것.

#### 2.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일치

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정치범을 석방하고 사면복권 조치를 할 것.

나. 교사들과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

다. 한국정부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 권고결정(Case No. 1629)을 즉시 이행할 것.

마.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를 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이 정한 수준으로 하고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것.

#### 3. 인권의 향상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가. 시기를 불문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고문과 살해 등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할 것. 진상조사후 가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하며 그러한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및 또는 준사법권을 갖는 특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할 것.

나.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체포할 것.

#### 4. 국내인권제도의 정비

- 가. 1992. 3. 3.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로 한 국내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정한 바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하여 연구, 조사, 전의 및 교육과 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
- 나. 유엔과 유엔의 전문기구, 그리고 각 지역별 인권기구 및 그밖의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할 것.
- 다. 국방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사회복지 및 인권관련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

#### 5. 인권교육과 홍보

- 가. 국제인권제도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관하여 각급학교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판사와 검사, 경찰관과 각종 수사기관, 교정공무원 등 법집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 나. 남여평등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
- 다. 어린이와 장애자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관련된 법제도를 재검토하고 특히 장애자들의 사회복귀와 고용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지금까지의 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6. 국제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한국정부의 책임

- 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피해국과 국민들에 대한 전쟁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피선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반대할 것.
- 나.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응호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항의할 것. 특히 이스트 티모르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 또는 침략의 대상이 되는 민족과 국가의 해방을 지지할 것.
- 다.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인권의 침해를 은폐하거나 응호하는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 나아가 인권침해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것.
- 라. 외국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이 국제노동기구의 일반적인 노동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업경영을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토론자료 2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제도 개요

(발제 ; 조용환)

##### 1. 유엔의 인권활동

국제인권제도란 국제적으로 보장되는 개인 및 집단의 권리들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보장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의 국제인권제도의 성립과 발전은 유엔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유엔은 현장의 첫머리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남여 및 대소각국의 같은 권리에 관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유엔은 성립 이후 각종 인권조약의 발의와 채택을 통하여,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세계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국제인권제도의 기초와 뼈대를 이루고 있다.

##### 2. 유엔의 인권관련 기구들

###### 가.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

(1) 유엔의 많은 기구 가운데 인권과 가장 깊이 관련된 것은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그리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기구들이다.

(2) 총회는 유엔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및 보건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이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도록 원조하는 것”에 관하여 “연구를 발의하고 권고”하도록 정한 현장 제13조에 따라 그동안 인권문제와 관련된 각종의 결의와 선언, 조약을 채택하였다. 유엔총회가 채택하는 결의와 권고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기준과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총회가 관심을 가져 온 문제들은 집단 살해, 인종차별, 난민보호, 무국적자 보호, 여성의 권리, 노예제도, 결혼제도, 어린이의 권리, 청소년의 권리, 외국인의 권리, 정치망명, 불구자와 정신장애인의 권리, 고문금지, 발전과 사회진보의 문제등 거의 모든 인권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그밖에도 총회는 인권과 관련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식민지해방에 관한 특별위원회, 인종차별에 관한 특별위원회, 나미비아에 관한 유엔이사회, 점령지구 인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스라엘의 조치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팔레스타인인의 불가침의 권리행사에 관한 위원회 등이 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는 현장 제62조에 의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할 조약의 초안을 준비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를 조직하기도 한다. 이사회는 현장 제68조에 의하여 “경

제 및 사회분야,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위원회)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를 설치하였다. 인권위원회는 다시 그 산하에 차별방지와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4) 인권위원회는 유엔에서 모든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권리와 국제조약의 초안을 작성한다. 또 총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부여한 특별과제를 처리하는데 그중에는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조사하고 통보를 처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인권소위원회에 특정한 주제나 국가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를 설치하거나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를 임명하기도 한다. 특정한 나라의 인권문제로는 남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쿠바, 엘살바도르, 이란, 이라크, 과테말라, 미얀마, 자이레, 하이티, 적도기니아, 인도네시아 등의 인권침해를 다루어 왔다. 주제로는 인종차별(apartheid)문제, 계속되는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를 보이는 상황,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상과 촉진, 자의적인 처형(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종교적 불관용(religious intolerance), 대량의 난민과 용병(massive exodus and mercenaries)문제등이 있다.

(4) 차별방지 및 소수자의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위원회가 선출하는 2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부에 의하여 선출되지만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소위원회 역시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

#### 나. 유엔의 전문기관들

##### (1)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전형적인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하여 아동노동이나 빈곤층의 문제, 직업훈련과 산업보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조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를 채택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넓은 뜻에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강력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여러 인권침해구제절차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절차”(Special Procedures for Complaint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는 국제노동기구의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노동기구의 본질적인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인데 최근 국제노동기구 집행위원회는 이 특별절차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그리고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시정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 (2)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UNESCO)

유네스코는 “정의, 법의 지배, 그리고 유엔현장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하여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네스코는 구체적으로 교육의 권리, 과학적 진보를 공유할 권리, 문화생활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 양심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정보의 권리, 과학, 문학, 예술적 생산에서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및 이러한 권리들과 관련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및 침해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사건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방문한 이유로 처벌받은 문규현신부와 임수경을 위하여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이 제기한 사건(Communication No. 826/89)에서 유네스코는 한국정부에 ‘관용’(clemency)을 베풀도록 요청한 바 있다.

#### 다. 유엔 사무국

유엔의 인권업무는 인권담당 사무부총장(Under-Secretary-General for Human Rights)의 책임아래 이루어진다.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은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인권관련 업무에서 사무총장을 대표하며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비준과 적용을 향상하며 사무총장의 인도적 업무(humanitarian good offices)를 보조하며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인권기구의 업무를 보조한다.

#### 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난민고등판무관은 총회에 의하여 1951년 1월 1일 설치되었다. 고등판무관은 난민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결과 비준을 향상하고 적용을 감독하며, 난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들과 협조하며 난민의 새로운 사회동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등 난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 3. 국제인권법

##### 가. 유엔현장과 세계인권선언

(1) 유엔현장 제1조 제3항은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고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향상하고 촉진하는 데 대한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55조에서 유엔이 “한층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및 경제사회적 진보와 발전의 조건”과 “인종, 성, 언어 혹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6조는 모든 가맹국에 제5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과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엔현장은 이처럼 인권과 관련하여 추상적이고 간단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인권을 국제화하여 인권문제가 더 이상 가맹국의 전속관할권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유엔에 인권개념을 정의하고 성문화할 수 있는 법적 원한을 부여했으며 그동안의 유엔활동을 통하여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가맹국들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을 밝혀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결의 217 A(III)으로 채택. 선포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모두 30조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인권의 내용과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의 내용은 크게 보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부분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부분, 그리고 각국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은 유엔현장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들이 이루어야 할 인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이 선언은 국제법학자들에 의하여 유엔현장이 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장 권위있는 문서이며 그중 중요한 부분은 세계의 모든 국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이 되거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후에 이루어진 유엔의 인권활동은 물론 인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자유와 존엄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되고 있다.

#### 나. 인권조약

(1) 그동안 유엔이 중심이 되어 채택해 온 인권조약들은 모두 70여개에 이르고 있고 그밖에도 수많은 선언과 권리, 결의 등이 있다. 그것들을 분류해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것은 흔히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라고 부르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이다. B규약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더욱 강화한 제1차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사형폐지를 위한 제2차 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가 있다. 그외에 집단적 권리인 자결권에 관한 것, 인종. 성.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제반 차별금지에 관한 것, 집단살해를 비롯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금지하는 것,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것, 구속되거나 수감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것, 국적과 무국적. 난민과 망명에 관한 것, 정보의 자유에 관한 조약,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 고용정책에 관한 것, 여성의 정치적 권리, 결혼과 가족.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것, 사회복지. 진보와 발전에 관한 것, 문화적 권리에 관한 것 등이 있다.

(2) 인권조약이 채택된 경우 그것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보통 세 가지 제도가 거론된다. 첫째는 당사국에게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일정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며 세째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사건을 통보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조약에 따라서 실시조치의 내용은 차이를 가지게 되며 첫째의 이행의무부과는 가장 초보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당사국이 꺼리기 쉽지만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3)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조약: 상당수의 인권조약들은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특별한 기구를 창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설치한 B규약, 인종차별철폐 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를 만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를 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한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를 창설한 고문과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조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등이 있다. 그밖에도 A규약의 경우에는 규약 자체가 정하고 있는 않지만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통 그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정부에 의하여 지명되어 4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일정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그 전문가들은 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선출되지만 정부의 대표는 아니며 정부에서 독립하여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문명형태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출되는데 기구는 조약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당사국은 그 조약을 비준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기에 자기 나라에서 그 조약이 정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함께 이루어진 진보, 그리고 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장애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구는 보통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보고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논평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차별 철폐조약에 의하여 이미 두 차례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바 있고 B규약에 의하여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하여는 1992년 7월 인권이사회가 심리한 바 있다. 인권이사회의 회의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KNCC 인권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한국고문희생자 원호회(STIK) 등이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를 파견하여 회의를 방청한 후 그 내용을 알리기도 하였다.

(4) 개인의 통보를 허용하는 조약: 인권조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국제기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실시조치에 속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라는 기준의 국제법이론을 중대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현대 국제인권법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B규약의 제1차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B규약의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인권이사회에 그 사건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1977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14건을 접수하여 그중 138건에 대하여 심리를 마치고 최종의견을 밝혔는데 그중 106건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당사국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하였다. 우

리나라의 경우 1991년 대기업 연대회의 사건에서 제3자 개입으로 처벌받은 손종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인권이사회에 사건을 통보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Communication No. 518/1992). 인권이사회는 사형폐지를 위한 제2차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의 통보도 심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고문방지위원회와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도 그 조약이 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통보한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통보제도는 국내의 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보자와 당사국은 서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통보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우선 당사국 국내법에 의한 모든 구제조치를 다 거쳐야만 하는데 인권이사회가 내린 최종결정은 공개된다. 이 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당사국은 조약의 최종 해석기관의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고 그 기관들이 내린 결정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갖기 때문에 피해구제와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5) 유엔의 1503 절차: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728F 및 1503호에 따라 진행하는 인권보호절차를 '1503 절차'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 제도가 보호하는 인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한하지 아니하고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든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통지가 되고 나면 그후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인권소위원회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형태"(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한다. 인권위원회는 정부당국의 답변을 들은 후 그 사건의 처리를 결정하는데 일단 사건이 인권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나라의 이름이 연차보고서에 공개되어 정치, 외교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1년과 1982년에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인권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심리에 회부된 일이 있다.

(6) 그밖의 제도들: 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제도들 중에서 다음의 것들은 특별히 중요하다. 강제되거나 비자발적인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는 실종이 일어난 곳을 묻지 않고 관련된 정부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보고를 요구하며 실종자의 정확한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사건을 유지한다.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밖의 제도로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 on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와 고문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가 있다. 이 기구들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활동한다. 또 개별 국가의 상황을 연구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록하며 실종이나 처형, 고문과 구금현상을 검토하여 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한다. 한편 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과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

(impunity)은 침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뻔뻔스럽게 만들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적 구제에 의존하게 하여 결국 법률에 대한 무시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실무위원회나 특별보고자들은 문제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직접조사하기도 하고 정부와 대화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행동"(urgent action) 절차에 따라서 사건에 개입하기도 한다. 또 유엔의 인권보호절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협박이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증인, 법률가, 그리고 친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는 "신속한 개입"(prompt intervention) 절차를 도입하여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정부와 접촉함으로써 관련자를 보호하고 있다.

#### 4. 맷는 말

국제인권법은 "작은 승리와 커다란 좌절로 기록된 조약, 선언, 그리고 문서의 바다"라는 표현(Jerome J. Shestack)과 같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전세계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사람들과 국가권력에 대하여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지금도 계속 그 영역을 확대, 강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가가 국제인권법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 확실하다. 특히 국제인권법은 그 본질상 전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으로 더욱 큰 설득력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고 국내의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왜곡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절실히다.

이번 세계인권대회는 이와 같은 국제인권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개선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인권대회를 통하여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정부도 국내의 인권상황과 제도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인권을 향상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요망된다.

### \*토론자료 3 : 유엔의 활동과 인권제도의 개선방안

(발제 ; 조용환)

#### 1. 서론

#### 2. 유엔의 조직구성

##### 가. 총회

-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뉴욕, 제네바)
- 전문기관(UNESCO; ILO; ...)

##### 나.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 (1) Functional Commissions-Statistical Com. Population Com. Com for Social Development, Com. on Narcotic Drugs.

Commission on Human Rights-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Working Group or Special Rapporteur (thematic or country)

- Commission on Status of Women
- (2)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 (3) Standing Committees
- (4) Expert Bodies
- (5)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6) UN Children's Fund
- (7) UNDP; UNEP ...

##### 다. Treaty-Monitoring Bodies

- (1) Human Rights Committee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Second Optional Protocol for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 country report; individual communication

- (2)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ountry report

-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country report; individual communication

- (4) Committee Against Torture-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ountry report; individual communication

- (5)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 country report

- (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untry report

##### 라. 그밖의 제도들 (CHR)

- (1) 1503 procedure
- (2)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 impunity 문제 제기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Special Rapporteur on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orture
- (3) urgent action ; prompt intervention

##### 바. Good Offices of the Secretary-General

#### 3. 유엔의 활동분야

- 가. Peacemaking
- 나. Peace-keeping
- 다. Disarmament
- 라.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마. Human Rights
- 바. Decolonization
- 사. International Law
- 아. Intergovernmental Specialized Organizations

#### 4. 유엔의 활동에 대한 비판들과 장점들

##### 가. 조직의 문제

강대국, 특히 미국 중심의 구조(안보리 상임이사국 폐지 또는 충원 문제), 총회의 권한이 유명무실(안보리권한의 총회이양 문제)

##### 나. 활동내용의 문제

강대국의사의 관철 - 집단투표로 인한 무책임한 결정(민주성원칙과 현실적 가능성), 국가 이익의 우선 - 이중기준적용

##### 다. 분쟁예방과 평화유지 기능미흡 - preventive diplomacy, peace-building

##### 라. 인권제도와 활동

- 예산부족(인력, 시설, 정보) - 유엔기구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예컨대 빈부격차, 환경, 개발 등 본질문제에 대한 접근부족,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유엔의 다른 기구와 인권활동의 조정, 통합부족, 인권관련 기구의 중복, 업무조정부족, 기존 제도와 기구가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 실효성의 문제

#### 마.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 각국의 전통과 민족, 개발의 문제 - 인권의 보편성 - 국가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 5. 인권회의의 쟁점

#### 가. 유엔기구와 절차의 민주화

- (1) Security Council - 상임이사국 제도 (폐지, 추가, 총회로 권한이양, 전쟁책임국가의 상임이사국 문제)
- (2) 여성, 아동, 원주민, 노동자 등 소외된 집단이 유엔에 접근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 모색
- (3)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간 인권기구의 부재 - 이 지역 인권단체들의 consultative status 확대, Sub-Commission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순회하며 회의를 열 것. 기술적, 인적, 재정 지원의 확대

#### 나. universal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 다. 기존인권제도의 재검토

- (1) 성차별 제거, 남여평등의 관점에서 개혁 - 모든 인권제도의 재검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 채택 및 구체적인 집행절차 강화(여성차별철폐 조약); 성적 착취반대 협약 채택
- (2) 인권에 관한 정의규정 재검토 - 개발에 대한 권리협약 채택; 강제이주와 정주지파괴 문제; 성적 착취에서 자유로울 권리; 고문규정의 재검토
- (3) 비상사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강화 - 사무총장(ICCPR, Special Rapporteur)
- (4) 차별철폐제도 강화 - 카스트제도 등,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
- (5) 원주민의 탈식민화

#### 라. 기존인권제도의 개선. 강화

- (1) 유엔기구에 대한 접근강화 - NGO의 consultative status 확대; CEDAW에 개별이의 절차마련; 인권교육과 훈련강화
- (2) treaty monitoring bodies 강화 - 국가보고제도 강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사후감시제도; NGO 보고서 제출; 회의과정 공개; individual communication 절차 확대; 결정의 구속력 및 사후감시제도; treaty monitoring bodies 간, 이들과 기존 인권기구들과 협의, 정보교환

(3) Thematic and Country Rapporteur or Working Group의 권한 강화 - 조사권강화; 권고의 이해여부 감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강화; 안전보장

(4) Sub-Commission에 정부관련자 참여금지, 타국민 추천가능

(5) 인권예산 및 자원확대 - 유엔예산 5%; 유엔인권센터 강화; 각종 기금의 확대

#### 마. 새로운 제도의 구상

(1) Special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early warning; emergency response capacity; flexible and innovative responses; improve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s; develop human rights programmes in neglected areas; coordinate UN activities which impact on human rights

(2) Permanent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3) International Penal Court - to try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08 on ad hoc tribunal on former Yugoslavia

\* multilateral treaty or amendment to the UN Charter

\*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ry; highly qualified in crimi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full-time judiciary

\* concurrent jurisdiction with the States over ordinary crim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exclusive jurisdiction over crimes of genocide, systematic or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apartheid; empowered to judge on legal and factual issues

\* sources of law - treaty establishing the Court, other treaties defin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ustomary law

\* subject matter jurisdiction - genocide; apartheid; mass or systematic violation of human rights including murder, torture, forced transfer or deportation of populations and persecution on social, political, racial, religious or cultural ground; war crimes including acts of inhumanity, cruelty or barbarity directed against the life, dignity or mental integrity of persons, such as torture and willful killing; other international crimes including drug trafficking and international terrorism.

\* independent office of prosecution

\* transfer agreement of the defendants

\* two level of jurisdiction

(4) War Crimes Tribunal for Asia

(5)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

(6)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Sexual Violences; Children's Rights

(7) Fact-Finding Mission

#### 바. 특별기구의 문제

- (1) IMF, IBRD, GATT 및 그밖의 기구의 정책이 유엔과 ILO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할 것
- (2)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ILO의 기준에 맞도록 할 것

## 6. 한국인권단체들과 관련한 문제들

### 가. 유엔기구의 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 문제 (상임이사국 거부권 폐지안, 추가안, 거부권없는 상임이사국 추가안 등) - 이차대전 전쟁책임국가(일본)의 전쟁책임이행과 상임이사국 피선문제 - 정신대관련

### 나. 유엔인권활동의 원칙

공개성, 이중기준의 금지, politicization 반대, NGO의 역할 강화

### 다. universal ratification of human rights treaties

ICCPR, CEDAW 등 유보조항 철회; Convention against Torture 유보없는 비준;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LO Conventions

### 라. War Crimes Tribunal for Asia; International Penal Court

### 마.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의 권한강화, individual communication과 결정에 대한 구속력 인정.

### 바. Special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사. 아시아지역의 인권기구설치문제

#### 아. 한국정부에 대하여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인권침해국들을 옹호하거나 인권침해를 비호하는 발언, 의결권 행사, 그밖의 활동을 하지 말 것. 식민지지배와 외국점령을 당하고 있는 국가와 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할 것.

## 7. 유엔 인권기구와 제도의 이용가능성과 방향

### 가. 유엔 인권기구, 제도,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

정보교환, 공유 체계; 유엔인권정보자료실; 세네바에 한국인권단체 대표부설치

### 나. 아시아 및 세계의 인권단체들과 정보교환

국내단체간 정보교환, 공유; 주제별, 사안별 관련단체 파악, 연대활동, 한국인권단체들이 아시아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일 것; 국내정보의 정기적 소개; 정기적 정보교환

### 다. 국제인권기구와 제도 이용

중요한 사례에 대하여 HRC에 Individual Communication; Treaty-Monitoring Bodies의 country report 심사절차 이용(counter report 제출 등); ILO의 Special Procedure 이용

### 라. 정부의 국제인권활동 감시

### 마. 국제인권전문가 양성

### 바. 국제인권활동에 대한 개념정리

## \*토론자료 4 : 인권보호제도와 발전모델에 대한 검토

(발제 ; 이 대 훈)

### 1. 문제의 제기

세계인권회의 사무총장 이브라히마 팔에 의하면 이번 회의의 중심주제는 「인권-민주주의-발전(개발)」이다. 여기서는 발전을 중심으로 유엔과 새로운 사회체제(대안) 그리고 인권사이의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개진코자 한다.

인권의 개념, 법제화, 보호운동 등은 다분히 서구근대사와 기독교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서구에 의존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 공교롭게도 지구의 전 지역으로 확산된 「개발」의 철학과 역사 역시 서구현대문명 및 자본주의의 팽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자본주의가 서구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개발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개발의 피해자」인 구식민지국가들에게는 필수적이다.

유엔의 선언문들에 의하면, 발전(development)은 「경제개발」과 같이 사회적 「개발」의 용법으로도 사용되는 동시에 개인의 발전(human development)과도 같이 사람의 기회, 성취, 자아실현 등의 의미도 가르키는 복합적인 용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발은 체제순응적인 모델로 추진될 수도 있으나, 유행처럼 「조화된 발전」과 같은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현 모델에 문제가 있으며 무언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즉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은 사실상 새로운 체제대안과 「연결」되어 있다.(연관성만 있고 추상화되기가 일쑤이지만) 즉, 개발 또는 인간발전이란 말은 사회운동측에서 말하는 체제대안-인간해방과 같은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다른 해결방법을 다른 용어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운동측에서 제기한 체제대안과 인간해방의 모습이 너무나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해 현재는 설득력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에서 출발하든 사회변혁에서 출발하든 현실의 문제는 같은 모습으로 부각되며 그 해결의 모색도 크게는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개발/발전과 긴밀히 연관된 민주주의 문제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진다. 누구나 민주주의를 거론하지만 민주주의만큼 하나로 정의내리기 힘든 개념도 없다. 현실 역사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주장되고 경험되었다. 저명한 국제기구와 인권전문가 국제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보통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특히 삼권분립과 기본권의 보장, 의회정치를 주요 판별기준으로 보는 듯하다. 보통 사회주의세력들이 강조했던 집단(계급)의 권리, 직접민주주의나 공동결정의 원칙은 잘 거론되지 않는다. 특히 자본-노동관계에서 경제권력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는 거의 무시되어 논의되지 않고 노동자의 결정권도 대체로 제약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비판적 관찰자라면 인권-민주주의의 연관성도

## 제4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당연히 어떤 민주주의체제가 가장 인권증진에 효과적인가라는 물음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즉 인권증진을 위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구현체 즉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팔의 문서에는 국가의 의무와 기존 국가의 존중이 원칙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국가가 국민을 고루 대표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는 당장에 하나의 미사여구로 전락해 버린다. 특히, 대부분 자본주의화된 현 세계상황속에서 경제적 힘과 정치적 힘의 관계는 국가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이런 맥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공동결정제도, 직접정치의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만큼 비민주적인 관계가 없는 듯한데 주로 강대국의 힘 때문이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정당화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즐겨쓰는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명분이다. 또 평화는 일정한 경제적 수준(예를 들면 기아의 해결)과 민주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반면 아주 최근에도 평화는 약속국 침략의 명분으로 쓰인다. 따라서 개발 혹은 발전의 목적이 평화라면 평화와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관점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재분배의 정의 - 제국주의전쟁과 식민지시대의 참화로부터 탄생한 유엔은** 당연히 신생국(구식민지국)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핵심내용중의 하나는 재분배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 이었다. 즉 과거에 빼앗긴 것의 '상환과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미사여구와 연관되어 있다. 비동맹운동에서는 강대국의 경제적 압력을 주권침해 내지는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국제해양법의 제정과정에서 인류공동자산의 평등한 사용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지배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는 유엔의 발전관을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발전의 문제는 '과연 개도국이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인권을 옹호하며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이제 조금씩 경제적 침략국이 되어가는 한국측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 2. 유엔의 발전관계 선언문들

다음과 같은 선언문이 지금까지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 사회진보와 발전 선언문, 1969.12.11 총회결의안 2542
- 기아와 영양실조 퇴치를 위한 세계 선언, 1974.11.16, 세계식량회의 채택
- 인류복지와 평화에 이바지하는 과학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 선언, 1975.11.10, 총회결의안 3384
- 평화에 대한 민족의 권리 선언, 1984.11.12, 총회결의안 39/11
- 발전의 권리 선언, 1986.12.4, 총회결의안 41/128

이중에서 발전의 권리 선언을 요약(의역)하면 다음과 같다.

단 문맥에 따라서 발전보다는 개발이라고 읽어야 더 나은 곳도 많다.

## &lt;취지&gt;

-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유엔헌장의 취지
- 개발은 개인과 전체의 종합적인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과정
- 모든 사람이 인권선언에 선포된 내용의 혜택을 받아야
- 기타, 인권, 민족자결권, 국가의 의무 등등을 상기하며…

## 1조 1항 : 발전의 권리는 인권의 불가분한 요소

2항 : 발전의 권리는 자결권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포함한다.

## 2조 1항 : 인간은 발전의 주체요 적극적 참여자며 그 수혜자다.

2항 :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발전의 책임이 있다.

3항 : 적절한 발전전략 수립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

3조 1항 : 발전권리 실현에 유리한 국내 국제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우선적 의무를 가진다.

2항 : 발전권리 실현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야

3항 : 발전과 그 장애물의 제거를 위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 4조 1항 : 국가는 별도로 또 함께 국제적 발전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2항 : 개도국의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해 부단한 지원이 필요하다.

5조 : 국가는 인종차별, 식민주의, 외세지배와 강점, 침략, 간섭, 주권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개인과 민족의 인권침해를 없게 해야 한다.

6조 1항 : 국가는 아무 차별없이 인권이 증진되고 강화되는 관점에서 상호 협력해야

2항 : 인권과 기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3항 : 국가는 시민·정치권리와 경제·사회·문화권리의 침해로 나타나는 발전의 장애를 없게 해야 한다.

7조 : 모든 국가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성립, 유지, 강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8조 1항 : 국가는 일국내에서 발전권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원, 교육, 보건, 식량, 주거, 고용, 소득분배에 대한 공정한 기회, 여성강조, 2항 : 인권실현과 발전의 모든 방면에 대중적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국가는 권장해야 한다.

9조 1항 : 이 선언의 모든 발전권은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항 : 해석의 일관성 : 기존 인권헌장, 인권규약 등과 같은 정신으로…

10조 : 발전권의 완전한 행사와 진보적 개선을 위해서 일국내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 법적 조치 및 다른 조치의 강구, 채택, 실행을 포함한 실행절차가 취해져야 한다.

## 3. 「발전의 권리」에 관한 쟁점들

## (1) 새로운 발전관의 등장 / 평화이론과 정치경제학의 기여

평화이론가들은 과거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관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평화문제를 구조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사회부정의의 극복)로 명제화하면서 구조문제로 접근해 들어와 발전의 문제와 맞닿게 되었다.

정치경제학에서는 개도국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 기존의 경제개발논리를 상당히 무너뜨렸다. 여기에 환경운동이 태동으로 서구의 개발지원기구(주로 3세계 민간부문 지원기구)의 일꾼이 기존 발전관을 포기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제 많은 개발단체들이 기본요구의 총족과 사람중심의 발전을 심봉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제기되는 대안의 발전관은 1기본요구총족 2내포적 발전 3자급자족지향 4환경과 조화 5구조적 변혁을 기본정신으로 하게 되었다. 「발전의 권리 선언」 이러한 변화가 낳은 첫 결실이기도 하다. 단 구조적 변혁의 상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 앞의 원칙들을 수용할 그릇이 없는 셈이다.

#### (2) 집단적 권리의 인정 문제 - 권리 및 협약 주체의 문제

오랜 기간동안 3세계 나라들의 요구는 선진국의 개발정책의 변화였는데, 그 요점은 선진국들이 3세계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실중 최근 것이 「발전에 관한 선언」이다. 이 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3세계의 민족적 이해와 서구일부국가의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이 부딪쳤다. 지금까지 인권은 개인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로 다루어졌는데 발전의 권리는 그 케를 달리하는 문제제기였다. 때문에 전통론자들은 인권은 국가권위에 의해 침해당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삶을 보장하는 장치이므로 집단의 권리(개도국 민족의 권리)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이 보호장치가 해체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선언」의 채택과정에서 두입장이 대결하면서 절충적 입장까지 3입장이 대두되었다. 첫번째는 개도국과 사회주의국 대다수가 취했던 입장 즉 발전의 권리는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권리라는 것이다. 논거는 저개발의 구조적 요인을 거론하지 않고 발전의 권리만 말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므로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권리의 주체(민족국가를 전제함)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균등상태에서 개인의 발전 권리는 존중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번째 입장은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발전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이었다.

미국 영국 북구 대표들이 이 주장에 앞장섰는데 논지는 「집단의 권리는 곧 인권의 해체」라는 철학적 반격의 형식을 따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대 제3세계 민족주의와의 고전적 갈등이었다. 서구선진국들이 민족주의를 무조건 터부시하는 경향과 아울러, 국제법상 모든 협약은 협약주체가 분명해야 하는데 발전의 권리는 다양한 집단의 권리를 (협약을 맺는 당사자인)정부가 대리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근거로 제기되었다.

결국, 「선언」은 이 상충하는 두 관점의 정치적 절충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두관점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과 개인들의 집합은 발전의 권리를 갖고 공동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의무를 갖는데 국가는 이를 촉진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선언」은 중요한 질문에 답을 못내렸는데 그것은 :

“발전의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 권리의 행사를 주체는 누구인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 권리의 행사를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요구할 것인가?” 등등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90년에 발전의 권리 문제에 대해 세계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발전에의 참여가 발전의 권리 실현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악되었다. 즉 민주주의 문제를 핵심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국내에서의 문제이고 외부적인 총족요건 즉 선진국의 협조와 정책조정의 문제는 정리되지 않았다.

#### (3) 권리 내용의 문제

발전의 권리는 개인, 집단, 국가의 권리가 혼재된 것으로 일단 정리되었다. 그러면 발전의 권리는 일단 개인의 권리의 합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발전의 권리는 인권조약이 규정한 인권의 합이라는 해석, 혹은 생존권등 기본권과 시민적 정치적권리의 총합이라는 해석도 내려진다. 그러나 「선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다.(8조) 집단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개발정책에 한 마을이 반대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처럼 분명치 않은 내용이 있다. 따라서 발전의 권리는 아직 내용도 분명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다.

#### (4) 효력의 문제

권리행사의 주체와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권리요구와 그 보장도 자연히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권리요구하고 또 보장하는 절차와 내용이 애매할 경우 이 선언의 효력이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 (5) 전망

발전의 권리는 그 시작이 난산이었다. 왜? 발전의 권리는 특히하게도 기존 질서의 성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세계인권선언은 사실상 서구 시민혁명과 그후 질서의 성문화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무언가 질서를 바꾸기 바꿔야 하겠는데 그 모델은 아직 합의할 수 없으니 그 몇가지 원칙과 정신만을 논쟁끝에 절충적으로 정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 흐름 즉 평화와 발전모델과 인권보장이 서로 융합되어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정리되는 흐름은 대단히 진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4. 발전모델과 세계체제 및 인권

지금까지 발전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본요구, 평화, 참여, 민주주의, 발전의 주체, 남북간 불균등발전, 구조적 변혁 등이 이끔말로서 등장했다. 이 말들을 하나로 꿰서 풀어쓰면 즉 새로운 모델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힘들다는 뜻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새로운 발전모델의 목표를 먼저 나열하면:

(발전모델의 정신은 평화-발전-인권의 융합이다.)

- 기본욕구가 충족될 만큼의 경제발전, 고로 평등한 분배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발전
  - 개개인의 발전이 포괄되는 내포적 사회발전
  - 환경과 조화되며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발전
  - '적극적 평화'를 유지 증진시키는 발전
  - 발전정책의 결정과 혜택에서의 사람들의 주체적 참여
- 즉, 직접민주주의 혹은 공동결정의 확대
- 민족국가간의 평등한 국제경제관계

로 되는데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기존 국제질서와 자본주의를 상당한 정도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대안의 모델은 현실적 장애를 고려해, 인권과 조화되는 발전이라든가 사람중심의 발전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된다. 반면 발전모델끼리 경쟁 갈등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권 변혁 이후로 일반적 차원에서 합의가 증대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현재 핵이나 환경 혹은 민족분규나 난민문제등 세계를 위협하는 문제들은 국제사회의 공동대처가 아니면 해결하기 불가능하며 일국내 또 국제적 연대활동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인식은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 인간행위의 세계화추세와 교통 통신 이성적 인식의 발전에 따라 그 연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공감하고는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발전모델끼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가는 출발점과 과정에서 갈등하고 있다.

앞으로의 실천과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발전의 권리」에서 논쟁된 문제와 발전주체, 실행 과정의 애매함을 다시 분석하면,

\* 기존 발전모델의 문제점 : 국가간 경쟁심화, 국가이념과 인권침해, 환경파괴, 기존 불평등구조 유지 이용, 물질적 소비주의적 문화, 목적지향적 가치관, 국가의 비대화, 군수분야 팽창, 종속구조 심화, 자원의 낭비...

- 개인과 사회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 상호의존의 관계가 있다.

- 개인과 사회는 국가로 조직되는데 냉전시기 국가는 과도한 행위자로 부각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지금까지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로 인정되어 왔다.  
- 국제경제는 현재 국가간 무역과 초국적자본의 지배라는 이중적 형식으로 나타나고 또 이구조가 비선진국의 발전을 제약한다. 갈등은, 국가간 이해상충(무역마찰, 경제압력, 결프전 등)과 초국적자본대 세계(자연파괴, 저질대중문화, 군수산업-전쟁유발 등)라는 이해상충으로 겹쳐서 나타난다.

- 개별 약소국가들은 종종 내부 불평등문제가 남북 불평등의 결과라고 믿는다.  
- 반면 개인의 인권에서 보면, 기존 국가가 인권의 대변자 혹은 행위자로 부각되는 것은 곧 기존억압질서의 수호와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 고로, 국가가 후퇴하던가 국가성격이 아예 바뀌던가 해야 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실천적 결론은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즉,

1) 국가간 평등관계를 위한 노력, 투쟁(제3세계 민족주의, 비동맹운동 등)

1) 일국내 평등을 위한 노력, 투쟁 즉 민주화운동

1) 총자본대 총노동의 갈등 즉 국내 및 국제 반자본 연대운동

이 밖에도 평화-군축운동, 이민노동자 보호운동, 군사훈련 저지투쟁, 수입개방 저지투쟁 등은 모두 새로운 발전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이 도출과정은 발전의 권리를 뜯어보면서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인권과 체제문제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말해준다고 보인다.

#### 5. 발전모델과 국가-노동-자본 관계 <구두발표로 대체>

#### 6. 앞으로의 과제

유엔의 무기력함을 따지기 이전에 유엔은 무엇보다도 두차례의 세계대전 즉 서구제국의 제국주의전쟁에 대한 인류의 반성으로 탄생했다. 또 현재로는 그 배경의 유일한 세계조직체이다. 그러나, 유엔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는 않은 듯하다. 유엔회의와 현실정치가 별도로 작용하고 G7의 결정은 인권보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종종 제3세계 민중운동권에서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비판된다. 탈냉전이라는 과도기에 제기된 세계회의 인권-민주주의-개발이라는 주제 역시 이와 같은 현실의 무기력함과 희망을 동시에 반영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주체라면 냉전강국의 논리와 작용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개발/발전문제의 핵심은 요약컨데 세계자본체제의 문제이다. 이는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제국주의론 등에서 말하는 중심부/주변부의 자본주의적 불평등구조가 문제의 핵심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진보적인 국제관계론의 관점-즉 반제연대성 및 노동문제와 노동자

연대성을 중심에 놓는 국제관계론-과도 가까워진다.

한반도문제도 1940년말 유엔이 개입하면서 전쟁과 분단으로 이여졌듯이 최근 캄보디아에서도 유엔의 개입이 대리전 성격의 내전을 막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엔의 비효율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본 등 강대국의 군사적 욕심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보스니아사태에도 무기력하기는 비슷하지만 유럽의 앞마당이라 미국의 개입이 제동걸리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유엔에서 제기된 핵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강대국이 개입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나 한반도에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는데에도 진정한 민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가중심의 정치가 지배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낡은 부대」이다. 새술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제대로 담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정신대문제나 이민노동자의 문제, 환경문제 등 국가중심의 협의구조가 한계에 봉착한 사태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이제 민초들의 목소리 즉 건강한 민간단체들은 국제정치에도 개입해 들어와 「새 부대」 즉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대표가 과반수 이하의 지지로 출범하는 '기형적'인 상황과 증대하는 정치적 무관심의 상황에서 비정부 분야의 확대와 상호연대의 강화는 새로운 질서형성과 그 합의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유엔과 관계된 국제관계는 회의활동이라고 한다. 비전문적인 민간단체가 회의를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강대국을 견제하려고 연대노력하거나 하나 하나의 국제회의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만들고 그런 힘을 모으는 일은 보통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에서 「현대문명의 발전모델 변화」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검토-진보를 위한 주체적 참여의 관점에서-는 탈냉전의 역사를 개척하는 의미있는 과정일 것이다.

#### 이 의미있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1) 기존 발전모델의 허와 실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 경제개발과 독점, 독재, 환경파괴, 강대국구조, 군비확대, 전쟁, 마약, 문화와의 상호관계, 자본주의의 여러문제에 대한 이해.
- 2) 발전의 새롭고 종합적인 지향을 가져야 한다.(원칙, 과제, 경로, 장애물 파악)
  - 이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꼭 이상적인 것은 아니며, 현대 자본주의문명의 폐해에서 출발하면 된다.
- 3) 국가중심의 발전전략을 비판하고 탈국가적 질서를 강조해야 한다.
  - 가속발전전략은 국력경쟁을 중심에 두는데 국력경쟁은 반드시 갈등을 낳는다.
- 4)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소유권의 민주화, 즉 민주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권리의 문제를 국가권력의 구성 및 소유권의 분산문제와 연관시켜 성찰해야 할 것이다.
- 5) 초국적기업을 견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연대적 힘을 축적해야 한다.
- 6) 변화를 위해서는 체제의 물질적 생산자 즉 노동자들의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 7) 국제회의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앞으로)

- 국제적 흐름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버리고, 동맹자를 찾아내고 현실목표를 설정해 공동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현대민주주의론 2, 한국정치연구회사상분과 편저, 한울
- 현대와 사상, 송두율, 한길사
- 자본주의 세계경제론, 이수훈, 한길사
- 동향과 전망 1992 겨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백산서당
- 마르크스주의와 국제관계론, 쿠발코바/크뢰상크 풍저, 한길사
- 유엔, 박홍규, 형성사
- Human Rights in a Changing East/West Perspective, AL+JH, 1990
- The UN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Ragnar Hallgren...
- Developing Rights: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R>N> Kiwanuka...
-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Complementary Perspectives - Complementary Content, Mark E. Denham...



개발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멕시칸 원주민들. 세계인권대회 기간에 매일 대회장 앞 광장에서 자신들의 고우의상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

## \*토론자료 5 : 원주민의 권리, 식민지하의 인권, 세계의 주요 인권상황

(발제 ; 김 경 남)

### 가. 원주민의 권리

#### 1. 서

원주민은 남극과 북극에서부터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지구표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거주하고 그 수는 대강 3억에 이른다.

원주민 혹은 토착민이라는 말을 정의한다면 문화와 종족이 다른 민족들이 토착하여 정복, 점유, 정책 등등의 방식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어느 나라나 한 지리적 지역에 거주한 민족들의 후예라고 한다.

미국의 인디안족, 북극의 아이누족, 아루샨족 북유럽의 사미족,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민, 토레스 스트레이트 섬주민,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등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자격을 갖는 원주민 조직은 1989년 12월 현재 11개가 있다. 또한 유엔 원주민문제 작업팀이 조직되어 있다.

원주민들은 그들의 서로 다른 동질성과 문화유산을 유지하기를 고집하고 있다.

원주민문제에 관해서는 비정부적 활동과 정부간 활동이 상호영향을 주어왔다.

첫번째, 비정부조직의 국제회의가 1977년 제네바에서 열렸다.

두번째, 1981년 역시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 모임들의 결실로 1982년 유엔원주민문제 작업단이 설립되었다.

#### 2. 원주민 차별에 관한 연구

1920년대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국제연맹에 접근했지만 어떤 확실한 결과가 없었다.

유엔이 결성된 뒤, 이 기구는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상황을 제시했다. 예로서 인권기관들이 소수민족, 노예, 징역, 강제노역 등을 취급하게 되었다.

전환점은 1970년에 소수민족들의 차별금지와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가 원주민들의 차별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라고 권고한 때였다.

1971년 조세 R. 마르티네르 코보(에콰도르)가 연구를 위한 특별판무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특별판무관은 광범위한 인권문제들을 제시했다. 거기에는 원주민의 개념, 정부간조직과 비정부조직의 역할, 차별의 제거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원리등이 포함되었으며 동시에 건강, 주택, 교육, 언어, 문화, 사회적 법적제도를 고용, 토지, 정치적 권리, 종교적 권리와 관행, 그리고 범집행의 평등 등이 포함되었다.

그의 결론과 제안들과 권고들이 원주민들이 당하는 인권문제들에 대한 유엔의 입장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 3. 원주민문제 작업단

1982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원주민문제 작업단을 구성하였다. 이 작업단은 1986년을 제의하고 1982년 이래 쭉 열려왔다.

이 작업단에는 모든 원주민들과 그들의 공동체, 단체의 대표들이 가담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작업단은 인권부분에 있어서 UN의 가장 큰 공개토론판이 되어 왔다.

이 작업단은 두가지 공식적인 과제를 갖는다.

-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적인 개발사업들을 검토하는 일.

- 전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원주민들의 상황과 열망의 차이를 고려에 두면서 그들의 인권에 관련한 국제적 기준들을 만들어 내는 일.

#### 4. 기준설정

이 작업단은 원주민들의 권리들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설정하는 일에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다.

1985년에 작업단은 유엔총회에서의 선언을 하기위한 원주민의 인권에 관한 성명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성명초안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속에는 인종과 문화적 특성들과 독특한 동질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량학살이나 문명말살로부터의 보호, 종교, 언어 교육제도에 관련된 권리, 소유권, 소유 혹은 원주민의 땅과 천연자원들의 이용, 사냥, 수렵, 목축, 수집, 통나무베는 일, 경작 등의 전통적인 경제구조와 삶의 방식의 보존, 환경보호, 관련된 국가들의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삶의 특히 그들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참여, 자치나 자기들 자신의 내부적이고 지역적인 일들과 관련한 문제들의 자율적 처리, 국경을 초월한 전통적 접촉관계와 협력들의 허용, 원주민들과 맺은 협약들과 조약들의 준수 등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가 총회에서 그 선언을 하기전에 이 초안본문을 모두 검토하고 승인할 것이다.

#### 5. 원주민들과의 협약과 조약들에 관한 연구

원주민들과의 협약과 조약들의 조인은 17세기와 18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조약의 조인은 여러세기 계속되었다.

많은 협약들은 원주민들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관련된 종족들로 종합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것은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상호신뢰와 존경의 뜻을 담고 있고 원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증진시키고 보장하는데 중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1989년에 경제사회이사회는 소수민족들의 차별금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로 하여금 원주민문제 작업단의 일원인 미구엘 알폰소 마르티네르를 원주민들과 그 소속국가들간의 협약·조약 그외 다른 건설적인 협정들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서를 작성할 과제를 수행

할 특별판무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대한 특별한 주목을 하면서 국내법과 국제법안의 원주민의 협약권을 최대한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유엔은 국가들이나 원주민들에게 이러한 협약들에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특별판무관에게 전달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미 체결된 수천개의 협약과 협정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의 기초 보고서는 1990년에 되어졌고 최종보고서는 1993년에 완성되어 소위원회에 제출되기도 되어있다.

#### 6. 원주민들의 권리증진에 관한 전망

원주민문제 작업단은 유엔에서 원주민권리 활동의 중심이다. 작업단의 보고서들이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작업단의 모체인 소수민족 차별장지와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로 중심이 옮겨졌다. 소위원회 작업단의 연차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원주민 차별”이라는 제목의 일정하에 그 추천안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작업단과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원주민들은 모든 현존하는 인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유엔 산하의 위원회들-인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적 제권리 위원회, 인종차별위원회 - 구속력있는 협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사회문화적 제권링 관한 주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들의-실행여부를 감독하는 이 원주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주민들이나 그들의 조직들은 점차 여러가지 의사소통기구나 고발절차들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개괄적이고 지속적인 유형들을 조사하기 위해 경제이사회가 제정한 소위 1503절차와 시민·정치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의 절차들이 그것들이다.

1978년 제네바에서 유엔이 개최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철폐 세계대회가 원주민들의 차별의 여러갖 양태에 대해 논의하고 적절한 절차와 대책들을 세워 활동계획과 결의안 속에 포함시켰다.

1979년과 1981년 여러 세미나를 통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철폐투쟁활동 10계획을 세웠다.

1990년 원주민 자치를 위한 전문가들의 모임은 제2차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열렸다.

1988년 10월 제네바에서 제2차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열린 세계협의회도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원주민들의 취약함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참석자들은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모든 정부들도 원주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 보장할 법적조치와 조건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1981년 코스타리카 상오세이에서 유네스코주체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특별판무관 마르티네즈 코베와 직업단·소위원회들이 몇가지 제안을 했는데 개발권의 실시에 관한 토론에서 원주민들의 권리문제를 강조하는 일, 또한 1993년을 국제세계원주민의 해로 지정한 일, 국제인권기구들을 원주민 언어들로 번역하는 일 등이 그런 것들이다.

제네바에 있는 인권센타가(소장은 인권담당 유엔 사무부총장) 유엔의 모든 원주민 인권활동을 관장한다.

#### 7. 국제노동기구(ILO)

1953년 ILO는 원주민에 관한 연구서를 발간했으며 1957년에는 원주민과 모든 종족들의 보호에 관한 제107호 협약과 제104호 권리안을 채택했다.

삶의 방식과 존재가 지배문화에 위협받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최초의 국제 법률기구들이었다.

1989년 6월에 국제노동협의회는 원주민들과 소수종족들에 관한 제107호 협약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그것이 지금의 제169호 협약이다.

총회의 결의의 하나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회원국권들에 대한 권리안들로 이루어졌다. ILO협약은 회원국가들을 강제하는 국제법적 참여를 가능케하고 있다.

#### 8. 결 론

원주민에 관한 작업단과 다른 인권기구들에서의 논의된 것들을 보면 원주민들의 관심과 민족적 혹은 개인적 개발사업, 그리고 관련된 민족들의 삶 그리고 삶의 스타일과 공공정책 그리고 계획간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해결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의 문제는 심각하다. 국민 경제개발이 아직은 원주민들의 손에 있는 토지에 압박을 가해온다.

이러한 개발은 원주민들의 경제·주권·종교 및 문화체계에 영향을 주어 왔다. 원주민들의 권리증진과 보호라는 과제에 유엔의 개입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대중의 인식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 질수록 이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면 유엔은 인권을 위한 공공정보 세계캠페인을 통하여 원주민들의 문제들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의식을 증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 나. 식민지 지배의 문제

유엔현장, 구식민지와 식민지민족 독립부여선언, 민족간 우호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도 모두 아직 독립을 이루하지 못한 모든 지역과 모든 인민의 자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엔기구와 제도들은 그동안 식민지배와 외세강점과 같은 극단적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식민지배와 외세강점은 동티모르, 뉴기니 뷰겐빌 등과 같은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유엔이 어떤 나라는 타국의 공격과 점령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또 어떤나라는 똑같은 경우이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이중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유엔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행동이며 점령당한 혹은 점령당할 위기에 있는 약소국의 이해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식민지배문제와 연관된 기준에 합치되도록 식민지 정책의 폐지 약소 민족의 자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민족자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 첫째,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평화협상
- 둘째, 민족자결권을 보장하는 절차 시행
- 셋째, 적절한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유엔세계인권대회 소식 제2호, pp.26-27 참조)

### 다. 세계의 인권상황

#### 1. 이스라엘 점령지역의 인권상황

작년 5월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스라엘과 남주 레바논 군대가 남부 레바논 지역의 촌락과 수용소에 억류하고 있는 200명의 억류자들과 36명의 이스라엘 내 억류자들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촌락수용소의 억류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군과 싸우는 무장군에 속했다는 혐의를 받은 레바논 사람들로 전기쇼크, 전기케이블로 채찍질하기, 막대에 거꾸로 메단채 물속에 처박기 등의 고문을 받아왔다.

이들은 1988년 이후 일체의 가족접견을 못받았을 뿐 만 아니라 심지어 국제적십자의 방문도 허용받지 못했으며 그 어떤 법적인 조치에 따른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2명의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교환조건 혹은 그들에 관한 정보교환 조건으로 이들의 석방을 고려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포로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고문과 박해 가족들과 국제적십자사들의 접견을 허용할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석방하여야 한다고 AI는 주장하고 있다.

#### 2. 미얀마의 인권상황

##### 1) 미얀마의 군부통치

국법 및 질서위원회(SLORC)와 군의 신임을 받은 버마 사회당은 30년간 버마를 지배해왔다. 1988년 9월 버마국민은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섬으로써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자 그때 이후 SLORC는 수천명의 정치가와 민주인사들을 감금하고, 조직적인 고문.강간.가혹 행위들을 자행했으며 수많은 사람들도 재판없이 처형하였다. 또한 수천명의 국민들이 군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지고 세계여론의 비판이 빗발치듯 고조되자 군부는 1990년 5월 총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야당 민주국민연합이 392석을 얻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SLORC는 수십명의 야당의원과 수천명

의 야당 지지자를 체포하고 200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 금지되었다. 1991년 민주국민연합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지도 재판이나 기소없이 감금되어 있으며 1992년까지 25만명이상이 미얀마를 탈출하고 있다.

#### 2) 정치범

정치적 구금의 척도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식기소나 재판없이 구금되고 있다. 1989년 초만해도 3,000여명 이상이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었다.

그 이후에도 정치적 반대자로 의심을 받은 수천명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엄령하의 군법정의 재판은 증언이나 증인이 무시되고 변호사의 변론이나 항소가 가능치 않다. 군법재판은 3년 이상의 노동형, 사형, 종신제의 3가지가 있는데 AI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법 재판후에 석방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 3) 고문

야당활동가들이나 다른 구금자들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상례적으로 고문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 고문방식은 잠안재우기, 식사와 식수를 금지시키는 일, 손가락끌 발가락.귓불.생식기등에 전기쇼크 가하는 일, 주먹이나 구두발.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하기, 헬리콥타 태우기-손목이나 발을 천정의 고정물에 매달로 빙빙 돌리기, 철로용 레일이나 대나무장대를 정강이 위 아래에 놓고 짓이기기 등등.

최소한 10명 이상의 구금자들이 고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SLORC는 자살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 4) 소수인종의 문제

수백명 내지 수천명의 소수인종들이 군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무기나 탄약 등 군수품을 옮기는 일, 도로보수, 군대숙소, 건축 등의 일 뿐만 아니라 영리사업에도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대상은 남녀노소 할것 없으며 어린학생이나 임산부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여자들은 군인들에게 강간당하고 피로와 사고로 죽기도 하고 구타당하거나 탈출을 기도하다 죽음을 당하고 있다.

####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군대에 의한 강간과 성폭력-

1991년 3월에 AI는 전세계에 걸친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개괄한 “전선에서의 여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무력충돌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을 보고했다. 특히 옛 유고연방(특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무력충돌로 말미암은 여성의 인권침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것은 강간과 성폭행 등 극히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것들이다. 이 지역에서는 모든 세력들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지만 주요범행자들은 세르비아 무장군인들로서 회교여성들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제약과 수치심 등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당한 인권침해가 밖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에 더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무력충돌로 말미암은 행정상의 혼란으로 조직적인 정보수집도 가능치 않고, 여성들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자주 이동하여 국제기구가 그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더 큰 어려움은 여성강간이나 성폭행에 대한 문제는 자신들의 행위는 최대한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상대방의 행위는 최대한 과장하는 식으로 선전하는 데서 온다.

이러한 이유로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제사면 위원회는 대부분 회교여성에 대한 강간과 성폭행은 세르비아계 군인들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강간과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구금을 통해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많은 장소에서 무수히 발생했다고 믿고 있다.

정치지도자나 군부지도자들이 반대자들을 위협수단으로 강간을 의도적으로 채택했는지는 아직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구금자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고의적인 민간인 살해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인권침해 행위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용인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헤르체고비나에서의 회교 크로아티아 무장세력도 비록 규모는 적지만 역시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폭행을 가해왔다.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척이 한 행위에 대한 보복의 형태로 희생당하고 있다. 어떤 경우 그런 행위는 남성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어 더 심각한 모욕감을 불러 일으킨다. 많은 경우에서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여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상관의 지원을 받아가며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기도 한다.

AI는 수용소가 강제로 여성들을 강간하는 곳으로 전락해 가는 사실을 우려하며 군이나 정치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통솔하고 있는 군대가 자행한 이 모든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밝혀지지 않는 모든 수용소가 밝혀져야 하며 국제기구들의 협력으로 이런 곳들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네바협정 3조1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제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무기를 버리거나 전투력을 상실한 군인을 포함하여)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신념, 재산, 성별, 태생 또는 다른 유사한 조건에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가) 인간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의 폐손, 잔혹행위와 고문.

나) 인질납치

다) 인격침해, 특히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등이 금지되어야 한다.

1992년 5월 22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네개 세력의 대표는 이 3항의 준수에 동의하라는 국제적십자의 제의에 합의했다.

#### 4. 동티모르

동티모르가 1975년 인도네시아에게 침략 당한 후 처음으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91년 11월 12일 수도 딜리의 산타크루즈에 모인 비무장시민들에게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발포한 사건이 있은 때였다.

소위 산타크루즈 대학살로 명명된 이 사건에서 최소 100명에서 273명의 시민이 살해당했다. 그러나 산타크루즈대학살은 그때까지의 계속되어온 폭력사태의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실로 1975년의 12월에 인도네시아 군대가 침범하여 동티모르를 핵병한 이래 이곳 주민 1/3이 살육과 폭력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기근으로 죽어갔다.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사망자 수가 20만에 달한다고 동티모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그수가 30만에 이른다고 한다.

산타크루즈대학살 이후 “폭력이 종식되기는커녕,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정치적 이유에서의 구속·고문·학대 그리고 재판없는 처형등등 보다 더 잔혹한 폭력을 자행해왔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보고한다.

반체제 인사들로 의심받는 자들에 대해 단기구금기간동안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고문과 학대 행위는 전기사형, 면도날과 칼로 날도질 하는 행위, 주먹, 지휘봉, 쇠파이프, 벽돌 그리고 전기줄 감은 잣대등을 입에 쑤셔 넣는다든지 머리, 정강이, 몸통 등을 구타하는 행위, 성적학대와 강간, 군화발로 차는 행위,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악취나는 물속에 오랜동안 처박아 넣는 행위, 잠안재우기, 격리 등등 다양한 행태를 따고 있다. 최근 한 피구금자는 나무몽둥이로 구타 당한 후, 한 군인이 그의 성기에 불펜을 쑤셔 박았다. 1990년에 15살의 여학생인 유로시아 다실바 알비스는 외음부가 짤린 뒤 그것을 입에 문체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또 그녀의 두 손에는 짤린 유방이 쥐어져 있었다.

1991년 11월에 수도 딜리 외곽에서 20명의 징장이 담긴 상자하나가 발견되었다.

동티모르인들은 단순히 정부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간다. 루카스 웨슬리 바우마우라는 사람은 지방 정부의 발전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을 인도네시아 신문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요아니타데 예수스 비에가스 갈로쿠라는 여인은 구속된 남편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총독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되었다.

#### 5. 관련된 국제조약·제도의 문제점

##### (국제조약)

###### 세계인권선언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네바 협정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헌장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자유

##### (제도의 문제점)

국제제도의 강제성의 결여로 사실상의 인권침해 행위를 막을 수 없다. 국제기구가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음으로써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의 인권침해의 문제가 무시되고 있다.

국내문제의 불간섭원칙이 강조됨으로써 밖으로부터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점

**(과제)** 유엔의 구조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대국 중심이 아닌 민주적 제도로 변경시켜야 한다.

인권특별판무관제의 도입

인권침해를 조사할 유엔대표단 직원 및 실무자들에게 책임있는 임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비정부단체의 활동강화 및 지역간 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

유엔이 인권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상설 국제인권재판소 설치

고문희생자를 위한 유엔기금 마련

조약감시 기구 마련

성폭력 조사단 설치

상설 국제형사 재판소 설치(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위해)

라. 유엔 안보리 개편문제

1992년 6월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비정부단체들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의 제언속에서 국제제도적 장치의 개편을 제시하였다.

그 깊은 다음과 같다.

국제제도와 기구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시민들의 집단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제도는 '북'의 소수의 특권적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지배 관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남'의 국가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아시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은 국제제도 속에서 그것은 '북'의 소수의 국가들이 운영하는 국제기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기관으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G7,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배관계는 국제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배관계에 의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북'에 의존하게 된다.

'북'의 힘을 갖는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남'의 문제에 간섭. 개입 함으로써 남의 여러 나라의 민족들의 생존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냉전의 막바지에서 미·소의 군사개입은 아시아를 포함한 '남'의 국가들에서 많은 대리전쟁을 유발했으며 적

어도 3,000만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바로 불공정한 국제제도적 장치가 아시아 지역의 수천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생명권-를 위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60개 NGO들은 구체적 제언으로서

a) 유엔을 지배하는 대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변혁에 협력하여 대다수 민족들의 순수한 갈망을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적 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는 거부권이나 상임이사국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가맹에는 현재의 인구수에 따르는 배분과 지역적 비율이 고려되어야 한다.

b) 모든 국가와 인민을 대표하는 유엔총회의 권한이 특히 국제적 안전보장·정치·경제·분야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c) 국제적 분쟁이 있을 때 무력행사의 권한을 UN에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UN총회에 국한 하여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중 기준에 따라 파병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조직과 운영문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 \*토론자료 6 :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

(발제 ; 김 삼 석)

### 1. 머리말

「나는 열이곱살 때 많은 조선인 여자들과 함께 일본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서 도착당 일부터 강간을 당하기 시작했다. 적은 날도 30명 가량을 상대해야 했다. 어느날 여자 두 사람이 두 손을 묶인채 마당에 끌려 왔다. 군인들은 그 여자들을 높은 나무에 매달았으나 여자들은『개같은 네놈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놈들은 칼로 여자들의 유방을 도려냈다. 피가 솟구쳤다. 그 여자들이 죽자 군인들은 여자들의 목을 베서 끓는 물에 넣고 그 물을 우리들에게 마시게 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철조망 밑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붙잡혔다. 군인들은 뺏겨 단 쇠몽둥이와 드라이버를 내 항문에 꽂아 넣었다. 놈들은 내 밥에 독약까지…」(동아 92.9.9)

1992.9.5일 평양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토론회에서 북한출신 군대위안부 할머니 이복녀씨(73. 함경북도 거주)가 일제만행을 충격적으로 증언하였다. 할머니는 고향에도 못돌아가 아기도 못낳고 꽃같은 어린 나이때부터 병이 들어 일생을 보내고 있다.

태평양 전쟁말기에 대구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중국 북동부와 버마(미얀마)에서 군대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문옥주 할머니(68).

1992. 10. 21일. 그녀는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우체국을 찾아가 당시 그녀의 예금-1943년부터 1945년사이 일본 군인들로부터 '성적노리개'의 댓가로 받은 군사우편 저금-사실을 입증하는 은행통장까지 제시했으나 돈을 찾지 못했다. 우체국 직원들은 예금기록은 1965년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모든 남은 배상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 92.10.23)

이 글은 민족의 모태인 자궁을 들어낼 수 밖에 없었던 희생의 댓가를 일본정부에 요구하였지만 종이껍데기에 불과한 한일협정에 되돌림 당한 남한의 할머니와 오늘날까지도 일제가 할퀴고 간 자국을 온몸에 남긴채 성병에 시달리며 천인공노할 만행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있는 북한의 할머니들을 부둥켜 안고 시작된다.

전후 48년이 지났지만 잔악한 전범국 일본이 일제치하 41년(36년이 아니라 1905년~1945년이므로)동안 저지른 식민지 범죄와 강제동원, 군대위안부만행에 대해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도 없이 해와 달만 거듭되고 있다.

이즈음 일본정부는 한국의 김영삼정권과 군대위안부 등 한일과거사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매듭짓기위해 외교적인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대다수 한국국민들이 주장하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사죄, 그리

고 사죄의 물질적 표시인 배상은 도외시한 채 가까운 시일내 양국의 졸속적인 타협안-올해 6월안에 제 2차 보고서 발표와 이후 보상대책-이 전격적으로 체결될 지경에 놓여 있다. 일본은 김영삼씨의 군대위안부문제의 물질적보상요구를 않겠다는 발언에 힘입어 강제연행 일부인정으로 무마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등의 피해자 단체와 일반 국민들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더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일제 침략 전쟁기(1937~1945)에 강제적으로 자행된 강제 징용, 징병, 군속, B·C급전범, 근로정신대, 군대위안부, 원폭희생자, 사할린동포 등의 약 750만명이상의 인명 피해는 인류최대의 비극일진대 이러한 일제 식민지만행의 엄청난 전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군대위안부의 강제연행 일부인정'으로 '전후처리'를 무마하려는 것은 또 다른 파렴치한 만행이며 반인륜적인 처사임에 틀림없다.

이제 전후 48년째를 맞이하여 잔악한 일제의 만행이 기만적으로 은폐, 축소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지는가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다 지금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4천만 국민이 일제가 저지른 군대위안부 범죄와 식민지만행의 진상규명, 사죄, 배상요구 투쟁을 전민족적 차원의 민족자주화 운동으로 끌어 올려야 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7천만겨레가 민족의 사활을 걸고 자주통일의 길에 새로운 방해자로 등장한 일본을 제대로 알고(知日) 경계, 규탄하는 반일민족자주화의 성스러운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오늘 한반도와 아시아에 '反日'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한·일 관계에서 현대사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아시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염원하는 부르짖음인 것이다.

그리하여 1905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허위로 불법조작되어 국제법상 무효인 을사조약, 국왕의 비준도 거치지 않은채 조작된 1907년의 정미조약, 밀실에서 진행된 굴욕적이고 망국적인 1965년의 한일 협정을 고쳐 나가고, 일제 식민지 만행과 강제동원, 태평양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군대위안부 만행의 진상규명을 이루기 위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남북한의 공동대응이 시급하다 하겠다.

### 2. 태평양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1) 일제 식민범죄, 태평양 전쟁 범죄와 전후처리문제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당시 아시아 각국의 고귀한 인명을 2,000여만 명 이상 살상시키고 패전한 전범국이다. 천인공노할 일본의 잔악상은 최근 일본군 '人肉食' 입증자료가 발견됨으로서 세상을 또 한번 경악시켰다. 이것은 전시범죄중 가장 큰 만행으로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제 침략군의 범죄행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주변에서 행방불명된 65명의 주민 대부분이 '사람고기'의 희생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한겨레 92.10.17)

전범국 일제가 지나간 학살의 만행은 1923년 관동대지진 약 6천명의 조선인 학살, 1937년 만주침략시 남경의 민간인 30만명 이상 학살, 지시마열도 노동자 5천명 학살, 1938~45년까지 한국, 중국인 3천명을 관동군 731부대에서 생체실험 등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중국의 경우 1~2천만명이, 필리핀의 경우 200만명의 주민이 학살당하였다.

전후 일본은 4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반도에 대해 전쟁만행에 대한 진상규명, 사죄와 실제 전후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일본이 1905년 불법적인 을사조약으로 강점하여 ‘한민족 멸종을 통한 일본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식민지배기간 41년 동안에 조선 민족에게 안겨준 인적, 물적, 정신적 고통과 윤리적 피해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임은 세상이 다아는 바이다.

일제 침략 전쟁기 (1937~1945)에 자행된 조선인 전시강제동원은 관과 국가명령에의 한 강제동원으로 가히 전조선인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수탈, 이용하였던 것이다. 남자들은 끌려가 창씨 개명되어 노예적 강제 인력수탈을 당했고 여성들은 정신대의 미명을 붙여 일본군의 성적 처리대가 되어… 이로 인한 강제 징용, 징병, 군속, BC급전범, 근로정신대, 군대위안부, 원폭희생자, 사할린동포 등의 약 750만명 이상(일본 대장성 보고자료 참조)이 당한 인적, 물적, 재산상의 피해는 인류최대의 비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중 1. 군사동원: 징용에 의해 군인 209,279명, 군속 154,907명, 2. 노무동원: 600만명 이상(전조선인과 일본, 사할린, 남방등 해외 공출 724,922명, 만주개척민등 조선내 공출 포함)

3. 性동원: 20만명 등이 그 일부이다. 이들은 강제적으로 전장에서 총알받이가 되거나 원폭의 피해를 입어 사망하였고, 살아 남은 자도 귀환도중 사망(우키시마호 침몰사건)하거나 실종 혹은 소개과정에서 희생된 인원이다.

그동안 유족회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사죄, 강제 연행자 전원의 명단공개와 생사확인 통보, 유해발굴 송환, 유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배상요구, 공탁금 반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사죄문제에서 일본 정부와 아키히토 일왕의 직접 공식사죄(이것은 반드시 모든 책임 문제 해결이 뒤따라야)이어야 한다. 강제 연행자 전원의 명단공개문제는 최근 지난해 12월 동경에서 열렸던 한-일 아주국장 회의 결과, 한국인 강제징용자 1만7천1백7명의 명부(후쿠오카현 탄광노동자 1만5천명, 일본산업보국회 순직자 9배 80명의 명단 포함)를 세번째로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인수하였다. 그동안 72년에 2만1천7백명, 91년 3월에 9만8백4명의 한국인 강제 징용자 명부를 한국쪽에 넘겨준 바 있고 앞으로 일본 후생성이 보관하고 있는 242,341명의 군인, 군속명부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다. 생사확인은 아직 사망신고도 못하고 호적에 살아있는 상태이다.

유해송환 문제는 종전후 일본정부의 공식보관(후생성) 유해(남,북한) 2,329구 중 1970년 7월 1일 “1구” 송환부터 8차에 걸쳐서 1188위(1984년 4월 현재)가 송환되고 현재 1140위가(남한 708구) 남아있다.

다음으로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자국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연간 약 2조엔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전쟁희생자 직계 가족 8,552명에게 1인당(사망자) 30만원씩 준 적이 있을 뿐(1975.7.1~1977.6.30) 보상다운 보상을 받아 본적이 없다. 그동안 유족회는 1991년 12월 6일 35명(군인군속 32명, 군대위안부 3명)은 공식사죄와 1인당 2천만

엔의 배상도 아울러 청구(동경지방재판소)하였고 이듬해 4월 13일 6명의 군대위안부들을 추가로 제소하였다(배상금 동일). 그래서 1992년 6월 1일 첫 공판이 열린이래 올 6월 7일 6차4공판, 9월 대질심문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공탁금 반환문제는 군인 군속들의 연금, 퇴직금, 급료, 채권등의 미불금과 저축금, 군대위안부등의 군사우편저금으로 1945년 9월발일자로 총 1천4백49만3천 계좌로 현 화폐가치로는 약 1조엔(7조원)지만 일본 우정성에 보관(동아 92.10.19)된 채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치부’하고 있어 머지않아 국고에 환수될 위험에 처해 있다. 피해자들의 반환요구에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로 청구권협정이 끝났고, 모든 남은 배상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내줄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조선 92.10.23). 종이껍데기에 불과한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이중삼중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전후책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외공출 결과 이산가족이 되어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된 현재 4만2천여명의 사할린동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쪽은 이 문제 또한 ‘65년 청구권 협정’운운하며 한-일 정부 사이의 협의대상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 입장운운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한겨레 92.12.24). 그동안 양국의 무관심속에 귀국길이 막혀 한많은 세월을 보내던 65세 이상의 교포1세들 77명이 전후 47년만인 작년 9월 처음으로 고국의 품에 안긴 뒤 올해 3월 42명이 영주귀국하여 양로원 “사랑의 집”(강원도 춘천군 소재)에 머물며 남은 여생을 모국에서 보낸 것뿐이다. 현재 사할린에 살고 있는 우리동포는 3만6천여명이다.

그리고 일본본토에서 10만명이 피해를 입은 원자폭탄 피해자중 한국인 5만명에서 4만 3천여명이 피폭의 상처를 안고 귀국했지만 피폭자의 3분의 1정도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일본인과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한겨레 92.10.26)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빛발치지만 아무런 원호도 하지 않고 있다(91~92년 예산에 제한된 사용을 조건으로 40억엔을 제공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인 전범자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국적 조항을 붙여 국제적으로는 일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워 처벌받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박탈하여 전쟁책임 까지 우리민족에게 지우며 보상에서 제외, BC급 전범자로 몰아 “23명이 망국의 한을 안고 사형을”, 148명을 육살이와 처형을 당하는 통한을 다시 한번 안게 하였다.

100만 재일 동포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법적지위와 사회생활상의 처우문제, 민족교육 문제 등은 나라 잃은 민족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단편적인 예로 일본정부는 올해 1월 8일부터 재일한국인등의 지문날인제를 폐지한 바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제도로 “목욕할 때도 소지해야 하는” 악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93년 3월 2일, 미국 뉴욕타임스지에 일본 낫산그룹이 재일교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그들은 일본 교토시 남쪽의 우토로 마을에 사는 재일교포 주민 80세대로 이 광고에서 일제에 의해 징요당했던 한국인들이 2차대전이 끝나자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상태에서 피땀흘려 집과 학교등 공동체를 세웠다고 막히고 낫산그룹은 87년 주민들에게 아무 통고없이 우토로지역의 토지 5에이커를 개발업자에게 매각, 교포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2차대전당시 군수업체로서 강제징용당한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낫산으로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철거령이 내려

져 상황이 급박한' 교포들을 미롯한 일본거주 외국인들이 겪고있는 부당한 차별대우는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일본 조총련계 중고교생들이 일본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참가마저 금지당하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경제대국 일본의 "심각한 인권유린"(동아 92.10.29) 앞에 식민지만행은 전후 청산을 뒤로 한채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자행이 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 불이행, 전쟁 수행목적에 강제동원된 한인징용자, 군대위안부, 학병등에 대한 각종 보상거부, 미불임금의 반환거부, 원폭 피해자에 대한 치료배제, 문화재의 반환회피, 재일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 사할린 동포문제의 미해결 상태로의 방치등으로 8.15 뒤 48년, 한일협정 뒤 28년째이지만 지금까지 미해결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 2) 군대위안부 할머니의 恨

'아직도 전쟁의 상처는 계속되고 있다'

50여년전 조선의 한동네 우물가에서 빨래도중 일본에 끌려가거나 더러는 공장에 취직시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꿈에 빠져 낳선 곳으로 실려갔던 순결한 민족의 딸, 망국의 딸들은 태평양 최전선에서, 이름모를 남의 땅에서 '천황의 하사품'으로 포악한 일본군들의 공중변소가 되어 철저하게 몸이 망가지거나 목숨을 잃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도 구사일생 어렵게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그 후유증으로 정신병, 공포증, 성병, 방광염 등에 시달리며 오늘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공공하고 있다.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시달림은 이루말로 표현 할 수가 없고, 전후 48년이 지난 뒤에도 전쟁의 상처는 우리의 주위에서 망각된채 계속되어 왔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해 듣지 못했다. 오히려 마치 죄지은 여인마냥 숨어살도록 강요당했고 민족의 수난을 온몸으로 이고 지어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 돌아온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와 정부는 그렇게 냉혹하리만큼 무관심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나라가 돌보았어야 할 가난하고 못배운 여성들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그 때의 수난은 한 할머니의 가정에서 지금도 태평양전쟁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할머니는 해방후 신경성 증세에 시달려 오다가 결혼하여 어렵게 가진 아들에게서 최근 매독증세가 나타나 남편과 헤어지고, 장가간 아들은 그날로 이혼하는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정부에 접수된 생존 군대위안부는 1백 3명이다. 한일 양국과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병환으로 또는 나이가 많아 이미 숨진 사람도 5명이나 되었다. 한국정부는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바지 가랭이 입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욕을 듣고 있다. 민족의 자존과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는 커녕 민족을 일본제국주의자에게 팔아먹고 그 앞잡이가 된 '굴욕외교 주범 김종필과 아이들'이 민자당인지 자민당인지 하는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92년 한 해 만도 두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지만 전후처리문제는 계속 답보상태이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일본인들의 불성실한 자세는 같은 핏줄인 군대위안부할머니들의 비통한 삶을 외면하고 그 처절한 절규에 귀막고 있는 한국민과 한국 정부에 대한 경멸에서 나온 것이라

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군대위안부 만행의 진상규명여론이 국내 외적으로 비등해지자 92.10.23일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은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및 보상에 앞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라고만 하였고, 10월 정기국회의 외무부 감사에서는 군대위안부문제를 정부 차원에서는 새롭게 제기하기 어렵다는 기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공허한 대답뿐이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그 뒤 배상과 보상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처럼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뒤 국정 현안으로서 처음으로 92년 10월 정기 국회에서 다뤄졌지만 정부와 제정당은 생색내기에 바빴다. 이 자리에서 정대협은 특히 "일본이 군대위안부 생계비 기금조성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자체예산 반영을 요구했지만, 12월 들어 발족한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으기 국민운동본부'는 민간차원에서 외로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가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육신의 아픔이나마 덜어주는 일조차 얼마나 인색하고 무관심한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산동네의 단칸 셋방을 전전하며 외롭고 지친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한국 정부와 대다수 국민의 도덕성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 하루바삐 조국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사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국가예산에서 하라고 김영삼씨가 직접 지시했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내년까지 미루게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을 부축해가면 매주 수요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의 '수요시위'를 이끌어온 정대협의 존재는 부끄러운 이 시대의 작은 위안일 수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라는 국제기구와 세계 주요도시에 정대협지부가 결성되었고, 유엔인권위 소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올 6월, 25년 만에 열리는 유엔세계인권대회에 필리핀과 공동으로 참여, 세계만방에 일본의 잔학상을 다시금 고발하고 전후배상을 촉구하는 등 군대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킨 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군대위안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일본정부는 1992년 1월에 와서 겨우 군의 「간여」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강제연행 사실을 시인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그해 7월 한국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제 1차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옛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의 모집에서 감독까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집과정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과연 일본이 군대위안부 만행을 비롯한 전후처리를 할려는 의욕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비린내나는 그때 그 현장에서 처절히 살아남은 할머니들과 언니, 누님들이 두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다만 일본은 할머니들이 단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산되었다는 일본은 단지 생색내는 차원에서 한국인 위안부문제 담당 책임자 다니노 일본 내각 외정 심의실장이 밝힌바 있는 한국인 군대위안부들에 대해 개인적인 보상 대신 한·일양국의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기금등을 창설, 양로원, 병원 등의 복지시설을 마련토록 한다(산케이 92.11.27)는 '시혜적인 계획'을 들먹이고 있지만 할머

니들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은 김영삼씨의 군대위안부문제의 물질적보상요구를 않겠다는 발언(93.3.13)에 힘입어 올 6월의 제 2차 보고서에서 강제연행 일부인정으로 무마 할 예정이다. 이는 또다시 이 문제가 은폐와 축소의연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선다.

일본정부와 혐한파(嫌韓派)들은 줄곧 군대위안부 만행의 진상 규명과 사죄, 피해자 및 유족배상과 같은 당연한 요구마저 지겹고 짜증스럽다느니 돈을 우려내려고 과거사를 들고 나왔다느니 하는 모욕적인 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하루바삐 일본은 군대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징병, 징용, 군속등의 강제동원 만행과 태평양 전쟁범죄와 식민지만행 전체의 진상규명 등 '전후청산'을 통한 한·일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바라는 한·일민중들의 간곡한 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은 지금부터다.

#### 1) 일본의 불법성

최근 서울대학 규장각이 간행한 자료에 의하면 1905년 11월 17일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체결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을사5조약」이 황제 고종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허거부, 수결, 옥새 날인 거부로 체결되지 않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신동아, 동아일보 92.5.12). 일제는 조약체결에 실패하자 체결되지도 않은 이조약을 체결된 것처럼 제멋대로 거짓 반포하였다 것이다. 즉 을사조약이 사기문서이자 완전한 허위조약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서 그뒤 자행된 외교권박탈과 통감부의 각종 식민지화 정책과 법령이 완전히 불법 만행인 셈이 되버렸다.

이 불법조약은 1910년의 「한일강제합방조약」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것으로 일본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했다는 한일강제합방조약의 유효론에 일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1910~1945년의 청구권기간만 논의한 것을 1905~1910년 사이의 일제침략에 대한 배상도 추가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65년 한일협정의 재검토와 재해석은 불가피하다.

또한 을사조약이 불법적인 조약임이 국제적으로도 드러났었다.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 15차회의에선 역사적으로 4개조약이 무효라고 기록되었다. 그중 하나가 1905년 을사조약이었다. 당시 회의엔 일본 최고재판소장이었던 요코다 기사부로도 참가했다(동아일보 92.11.9). 이같은 역사의 진실이 드러난 시점에서 남한당국은 불법조약의 무효를 일본에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 2) 한일협정의 재해석

1952년 1차 회담으로 시작된 한일회담은 1965년 7차 회담으로 결말을 보게 되기까지 과거의 침략시대에 대한 일본측의 사죄 및 반성의 의사표시가 전혀 없다. 당시 62년 6차회담이 후 63년에 들어와 회의 의제는 교묘히 청구권 문제에서 경제협력 문제로 부르며 일방적으로 주도하였다(한겨레 92.5.28). 이를 한국에 강요했으며 미국도 한국이 일본의 경제협력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은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일본에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다. 체결문 어디에도 태평양전쟁 희생자, 군대위안부 부문에 대한 피해 상황은 찾아볼수 없고 선배노동자였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탄광, 군수공장에서, 피땀과 몸판값은 '유노동 무임금'인채 엄청난 액수(공탁금, 미지불금)가 일본의 전후복구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아는 사실이다. 우리들은 독일의 벤츠자동차회사가 전쟁기간중 강제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2천만 마르크의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상기 할 (중앙 93년 3월 2일)필요가 있다.

해방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결된 것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조약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기초위에서 새롭게 수립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조항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발전 계획을 급속하게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한일협정에서 구하게 되자 결국 무상3억,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지원으로 청구권은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김종필-오상3억,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지원으로 청구권은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김종필-오히라메모(동아일보 92.6.22)에서 알 수 있듯이 밀실에서 비밀자료를 교환하며 '제 2의 을사조약' 한일협정은 의문투성이인 채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목을 조하고 있다. 굴욕협정의 주범 김종필민자당 최고대표위원의 처벌은 전후처리의 첫걸음이며 한일간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서라도 한일협정의 비밀자료는 시급히 공개되어 근본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시킨 반인륜적 협정개폐에 성실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후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한일간의 전후배상은 이제부터다.

65년 조약체결 당시 일본은 일괄타결을 위한 보상 산정의 근거로서의 명단 제시는 물론, 숫자마저 파악하지 않고 자료망실을 구실로 청구권 대상자료의 은폐에 주력했다. 따라서 '피징용자 보상권'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일본도 군대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했으므로 한국정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내세워 한일 협정의 종료를 통고해야 하고 "정부가 한일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경우에는 한일분쟁으로 발전해 협상을 시작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또한 국가의 배상청구권과 개인의 그것은 엄연히 별개이다. 전쟁책임을 묻는데는 전쟁배상과 민간배상이 있으며 그 중 전쟁배상은 당사국 정부간의 협정을 통해 포기할 수 있으나 민간배상 청구권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일소조약으로 일소정부간 보상문제를 매듭지었으나 최근 「민간인들의 배상청구는 별개문제」 라며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배상청구를 지지하고 있는 이중성까지 비추고 있는것만 보더라도 말이다.

#### 3) 국제법의 위반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국제법상 '시효 부적용 원칙'에 따라 한국이 재판권과 범인인도권을 갖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한겨레 93/03/01)는 주장은 확실한 전후정산의 이론적 준거틀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역사비평> 봄호에 실린 '일본의 전쟁범죄 처벌 지금도 가능한가'에서도 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에 근거해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각국이 나치전범을 색출해 처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쟁범죄와 전시 및 평화시에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범죄처벌에 대한 어떠한 국제법상의 시효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같은 2차대전 전범인 일본인이 그들 국내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는 것은 국제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역시 자국의 헌법에서 "일본에 의해 체결된 조약외에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스스로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전범대상으로는 전쟁발발 범죄자외에도 협약상 평화시의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군대위안부와 강제징용자의 가해자들도 포함되 난.

전범재판은 공정한 국제형사재판소가 맡는 것이 가장 합당하나 유엔에서도 염원하는 이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법상 '보편적 관할권'이론에 따라 범죄 피해국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일제의 식민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를 국제법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그것이 무효임이 드러난다. 국제법에서 널리 알려진 법적 용어인 '유스 코겐스', 이른바 근본규범(강행규범)은 어떤 법률주체가 다른 주체의 법률적 이익이나 권리로 침해할 수 없도록 조약 또는 협약체결의 권리 제안이다. 반인도적 노예의 위치로 전락하여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식민지 시기 희생자들이 그 가해자이며 범죄자인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유스코겐스에서 보는 대로 일제 식민지 시대 희생자들의 배상청구권을 포기시키는 한일협정의 조항은 근본규범과 충돌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제의 잔혹한 인권유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한 한일협정은 무효이며, 이에 구속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한일간의 현대사를 누더기로 만든 한일협정의 개폐가 시작되었다.

#### 4. 북한-일본수교 협상과정에서

일본에 있어서 「일본-한국」과 「일본-북한」은 「정합성」이 필요하다.

즉 남한과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 이후 국교정상화의 기점이 되어 군대위안부, 강제연행, 전후보상등의 중요문제는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일본수교협상은 처음부터 하나의 조선, 공식사죄와 보상을 명기한 3당(노동당, 자민당, 사회당)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시작하였다. 일본당국이 두려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약이 북한-일본간에 체결되면 비정상적인 남한-일본간의 조약, 한일조약의 개정·폐지가 불가피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본과 수교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은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 등 일본의 철저한 과거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으로 일본의 남북한에 대해서 「정합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스스로 을사조약의 무효화와 한일합병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을 성실히 해야 할 것이다.

#### 5. 글을 맺으며

최근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총리는 참의원에 93.3.22. 출석, 군대위안부 동원이 반인도적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한 사회당 의원의 질문에 반인도적 범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망언(중앙 93/03/23)앞에서 과연 전후처리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하기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현재 일본은 전후처리에 아무 생각 없다.

북한은 "일본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려고 한다면 그릇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월 30일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 한-일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군대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문한 명의의 담화를 발표, 한국정부가 군대위안부들에 대한 불질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본측이 기금을 창설, 생존자들에게 구제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20여만명에 달하는 군대위안부 희생자들과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내외통신 8329호-93.4.1). ◆일본 정부의 보상기금 설치 움직임 ◆남한의 물질적 보상요구 자체 ◆한-일 정상회담 조기추진 등을 한-일 두나라가 공모결탁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하려는 것이라는 최근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반인도적 범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일본을 향해 메아리 없는 '진상규명'만을 외치고 있다.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친일파인 매국역적 이완용의 증손조차 매국의 댓가로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를 되찾고 있는 지경의 이르러서야 말이다.

### \*토론자료 7 : 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 박찬운)

#### 1. 머리말

현행 행형법은 일제 시대의 감옥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현대의 행형의 목적인 교육형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한마디로 죄지은 사람을 옥에 가두어 감시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형제도는 수형자의 자유를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비인도적인 제도가 도처에 깔려 있는 실정이다. 더욱, 우리의 행형이론은 아직 기본적으로 피구금자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릴 수 없으며, 그 기본권침해는 전혀 사법적 혹은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이 지배하고 있다. 행형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넘었음에도 이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거론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교정 당국자들은 우리의 행형제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기는커녕 “재소자의 처우는 국제기준에 충족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어 정부에 의한 행형제도 개선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 2. 피구금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 국제인권원칙과 그 법적효력

우리나라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피구금자에 대한 규정으로 고문, 비인도적 혹은 품위를 상하게 하는 취급과 형벌을 금지하는 제7조,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인도적이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한 취급을 정한 제10조, 변호인선임권 등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제 14조, 사생활, 가족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금지한 제17조등등 두고 있다. 이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연합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약칭:최저기준규칙)은 1955년 범죄예방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제1회 국제연합회의에서 결의된 것으로 195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 채택 되었다. 이 규칙은 피구금자의 처우와 시설의 관리지침으로서의 성격과 피구금자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국제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합은 이 규칙의 실시를 촉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제연합 사무국에 의한 조사를 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미 1967년과 1974년에 회원국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규칙이 세계각국의 행형제도에 미친 영향은 심대하고, 이 규칙 자체는 조약은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으로서 혹은 국제인권법의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밖에도 국제연합 피구금자보호원칙 등 많은 국제규준이 만들어져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외의 규준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위 국제규약을 비롯한 인권관계 규약을 해석하는 때에 유력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한국의 행형제도는 국제원칙을 충족하고 있는가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이론은 행형제도도 범죄의 수사, 재판의 과정에서 와 같이 헌법 제12조의 적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적 시각에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피구금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즉,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법앞의 평등을 비롯한 기본권 전부) 다만 구금의 목적에 따라 그 일부의 기본권이 필요 최소한의 제약 원칙(헌법 37조)과 법률의 적정의 원칙(헌법 12조)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다.

##### 가. 미결구금자에 대한 처우

우리 법상 미결구금자에 대해서는 행형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결수(수형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다(행형법 제62조). 따라서 행형법규와 기타법령에 미결구금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처우는 기결수와 동일한 것이 우리 제도이다. 따라서 미결구금자는 헌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있음에도(헌법 27조 4항)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행형제도의 현실이다.

국제인권원칙은 미결구금자에 대한 처우는 사법권의 집행의 필요성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처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수형자(기결수)와는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원칙상 보장돼 있으나 우리 행형제도에서 보호되지 않고 있는 특징적인 처우는 사복착용의 권리, 작업의 권리와 보수지급, 미결구금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청구권과 변호인과의 비밀접견권(법집행관이 감시할 수는 있지만 청취할 수는 없다)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국제인권원칙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미결구금자에 대한 처우는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수형자(기결수)와 같이 취급한다는 행형법의 원칙 자체가 국제인권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 나. 피구금자의 외부교통

(1) 우리의 행형제도상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과의 접견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절대적인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절차는 대부분 행형법에 의하여 실시될 수밖에 없다. 행형법과 시행령은 변호인과의 접견이 절대적인 권리임에도 접견은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만 허용하고 있다(시행령 55조). 다만, 접견시간은 일반접견일 경우는 30분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변호인에게는 제한이 없고(시행령 54조) 접견시의 기록에 있어서도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변호인의 성명 및 주소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58조 1항). 그러나 입회인 없이 완전비밀로 접견가능하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수형자(기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현재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접견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변호인과의 물건의 수수는 형사소송법 34조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이는 원칙에

불과하고 행형법에는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변호인도 미결구금자에게 금품이나 기타 물건, 문서를 교부하고자 할 때는 행형법의 영치규정(41조-43조)과 시행령의 영치규정(126조-138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접견과 동시에 물건을 교부할 수 없고 신청절차(시행령 132조)를 밟고 교도관에 의한 검사를 받아 소장의 허가하에 미결구금자에게 전달된다(시행령 133조). 미결구금자와의 신서의 교환등 통신의 권리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서신의 회수가 제한되고(시행령 31조), 변호인과의 서신내용도 검열된다(시행령 62조), 나아가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인에게의 서신도 쓸수 없다(시행령 63조)

국제인권원칙을 보면, 세계인권선언은 범죄의 소추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을 부여받는 공개재판”을 보장한다. 국제인권B규약은 이를 구체화하여 “방어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 및 편의를 부여 받으며 스스로 선임하는 변호인과 연락”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14조 3항(b)). 최저기준규칙은 미결구금자에 대하여 “자기를 변호할 목적으로 변호인의 방문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이 접견은 경찰관 또는 시설직원의 감시하에 둘 수는 있지만, 담화의 청취는 가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93조), 이같은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위치”에서는 감시는 유럽 각국에서는 일반접견에서도 지켜지는 일반원칙이다. 나아가 변호인과 미결구금자간의 물건·문서의 수수 및 서신을 비롯한 통신에 대해서는 국제인권B규약 3항(b)의 “방어를 위하여 충분한 편익을 부여받고, 변호인과 연락한다”에 당연히 그를 위한 문서와 물건의 수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최저기준규칙 93조는 “비밀의 지시 문서를 준비하고 이를 변호인에게 전달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미결구금자의 희망이 있으면 필요한 필기용구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럽형사시설 규칙 93조는 이같은 내용을 확대하여 “변호인으로부터의 비밀의 문서를 수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보호원칙 18과 변호사원칙 8은 “검열되지 않고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보장규정은 수형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에도 적용되는 것이 현재의 국제인권법의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인권법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 제도는 기본적으로 방어권보장을 위한 변호인과의 교통권이 본질적으로 제한되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결구금자와 변호인이 접견하는 것은 시간에 제한없이(근무의 시간, 휴일에도) 허용되어야 하고, 그 접견과정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변호의 과정에서 문서나 신서, 물건의 수수가 필요하다면 검열되지 않고 변호인과의 교통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일반인(가족·친구 등)과의 교통권에 관하여, 우리의 행형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접견에서는 친족이외의 자와의 접견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하고(행형법 18조 2항), 접견회수도 제한이 있으며 접견시간도 30분을 넘지 못한다(시행령 57조), 접견시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여 면담의 요지를 기록한다(시행령 58조), 미결구금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규정(89조, “법률의 범위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이 있으나 행형법은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결국은 수형자에 대한 접견규정이 준용될 부분이 많다. 실무상 미결구금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일반접견을 실시하고 있는 것외에 접견의 실태는 수형자와 대동소이하다. 수형자와 일반인과의 신서의 교환은 친족 아닌 자와의 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

에 한하고(행형법 18조 2항), 회수도 제한이 있으며 서신의 검열은 그 대상이 누구라도 시행하고(시행령 62조) 교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발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시행령 63조).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신은 일요일, 휴일 또는 휴게시간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다(시행령 65조). 미결구금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89조에 의해 서신 교환도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행형법령에는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다. 실무상 미결구금자에게는 횟수제한은 없으나 검열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교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수발이 금지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 문제에 관한 국제인권원칙은 가족 및 친구등과의 접견, 서신의 교환 등을 교통권의 일환으로서 함께 보장하고 있다. 미결구금자에 대해서는 가족 및 친구등과의 교통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국제인권B규약 3항 b의 “방어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 및 편익이 제공된다”에는 당연 그들과의 교통권이 포함된다. 최저기준원칙에는 미기결수에 대한 통칙으로 “필요한 감독하에 가족 및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일정간격으로 허락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필요한 감독”이란 서구수준으로 부터 보면 “볼 수 있지만 청취할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미결구금자에 대해서는 특히 92조에 “가족, 친구와 통신하거나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재판 및 시설의 안전 질서만을 위하여 제한된다”라고 규정되어 특히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수준에 비추어 한국의 피구금자의 가족·친구등과의 교통권은 미결구금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위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교통이 제한되고 있고(접견회수, 접견시간, 교도관의 입회, 서신검열 등), 수형자에게도 수형자의 사회화에 필요한 외부와의 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첫째, 면회의 회수나 면회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증가되어야 한다.(예, 미결구금자에게는 1일 2회이상, 1회 30분이상, 현재 면회시간은 30분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5-10분이다.) 둘째, 면회시에는 교도관의 감독은 가능하나 그 내용은 특별한 경우(예, 법원의 결정)가 아니면 청취해서는 아니된다. 세째, 신서의 교환도 원칙적으로 검열없이 자유스럽게 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예, 범죄와 관련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검열이 가능토록 되어야 한다.

#### 다. 피구금자의 생활조건

우리 행형법규에는 구금시설의 거주조건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피구금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현실도 피구금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에는 우리의 구금시설은 대단히 불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피구금자들의 거주조건, 의류, 침구 및 일용품 등의 공급상태, 식사의 질, 위생 및 의료 수준 등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할 만큼 열악하다.

국제인권수준을 살펴보면, 거주조건에 관해 최저기준규칙 10조는 “피구금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설비, 특히 취침 설비는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건 전부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기후조건, 공기량, 개인차지최저면적, 조명, 난방, 환기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는 “피구금자가 기거하거나 작업하는 모든 장소

의 창문은 자연의 광선으로 독서하거나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하며, 통풍 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조명도 피구금자가 시력을 해치지 않고 독서하거나 작업하기에 충분하도록 해야한다” 규정함으로써 피구금자측에 입각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의 조건도 동 규칙 14조의 “피구금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내의 모든 부분은 항상 적절히 관리하고 또 세부에 이르기까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하에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류, 침구에 관해 최저기준규칙 19조는 피구금자에게는 지방 또는 각국의 생활수준에 따라 독립의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가 지급되고,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 의류는 기후에 알맞고 건강은 유지하기에 적합한 충분한 의류가 지급되어야 하며, 의류가 피구금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의류의 청결을 위한 교환, 세탁이 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 규칙 17-18). 식사에 관해 최저기준규칙 20조는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건강, 체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영양가와 위생적인 품질로서 잘 조리된 음식을 급여되는 것을 요구한다.” 외국입법례 중에서는 음식의 맛과 채식주의자 및 종교상의 식사관습까지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위생에 관해 최저기준규칙에는 “위생설비는 피구금자가 필요할때 청결하고, 단정하게 생리적욕구를 볼 수 있도록 적합해야 한다”는 것(규칙 12조)을 비롯하여, 필요한 만큼의 목욕, 샤워 시설의 설비(13조), 세면도구의 지급(15조), 단정한 용모를 가질 수 있을만한 조발설비(16조)와 피구금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설의 청결유지(제14조)를 시설측에 요구하고 있다. 운동문제에 관해 최저기준규칙 21조1항은 실외작업을 하지 않는 모든 피구금자에게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옥외운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 2항에는 운동시간중에 체육적 및 오락훈련을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수준은 의료에 대하여도 두터운 보장을 하고 있고 진료와 그 기록에의 접근권을 상세히 보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최저기준규칙 22조는 미기결 모든 시설에서 어느정도 정신의학의 지식을 가진 자격있는 의사에 의한 진료권(1항)과 자격있는 치과의사로부터의 진료받을 수 있는(3항) 의료진의 인적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시설내 병원의 기구, 비품, 약품, 보조직원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2항). 26조는 의사에 의한 위생관리(피구금자의 위생, 의류, 침구의 청결성, 난방, 조명, 체육시설 등)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면 시설의 장은 조속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으로서는, 첫째, 생활조건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피구금자의 사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이 되어야 한다. 둘째, 거주시설 및 의류, 침구, 식사, 운동, 의료등 생활조건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법률로서 정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기준과 원칙은 최소한 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상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런 후에 시행령등으로 세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세째, 법률과 시행령 등 제행형 법규에 규정되는 생활조건에 관한 제규정의 입법방식은 재량행위의 제한으로 나타나야 한다. 현재의 법규 대부분이 소장의 재량권으로 준수를 안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째, 생활조건은 법이 아무리 세세히 규정해도 공문화되기 쉽다. 그것은 행형시설이 제3자에 의해 감독되지 않고,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행형시설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조건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행형시설에 대한 감독제도와 피구금자의 불복신청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라. 규율과 징벌제도

현행법상 구금시설(교도소, 구치소, 감호소)에서의 규율은 재소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동 규칙은 규율의 내용을 일단 1호에서 32호까지 3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놓고 있으나 이외에도 33호에 “교도소등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고지된 사항의 위반”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둘로써,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뿐만 아니라 소자의 권한에 의하여 만들어진 내부 규칙, 이에 따른 교도관등의 지시 일체가 규율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징벌의 요건인 규율위반의 경우 행형당국의 자의적인 조치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실제로 교도관의 부당대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곧 교도관의 지시·명령위반이 되는 것이 우리 행형제도에 있어 규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징벌의 종류에 관하여 행형법 46조는 경고, 3월 이내의 도서열독금지, 청원작업의 정지, 5일 이내의 운동정지, 작업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2월이내의 작업정지, 2월이내의 접견, 서신금지, 2월이내의 금지, 7일 이내의 감식 등 9개의 징벌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징벌과 같은 규정이외의 징벌, 예컨대 분리수용이나 수갑을 채우는 등의 일도 일어난다. 징벌의 종류가 아니면서도 징벌과 같은 것으로 제도화된 것은 감식 또는 금치처분을 받은 자는 기상후 취침시간까지 정좌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동규칙 6조의 2). 징벌의 절차로서는 징벌은 3인이상 5인 이내의 위원과 위원장은 소장으로 구성되는 징벌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정한다(행형법 47조). 구체적인 절차는 소장이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견을 구하며(징벌 사유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내) 징벌위원회는 3일이내에 의결한다. 의결과정에서 징벌혐의자를 환문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으나 만일 그가 거부하면 서면심리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징벌 혐의자의 진술기회도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것은 아님). 징벌위원회는 의결을 하면 징벌의 결서를 징벌요구자에게 통고한다. 현실은 징벌의 사유가 아니라고 혐의자는 주장하는 경우라도 징계과정에서 충분히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징벌은 아니지만 그것과 함께 문제되는 것은 구속구(계구)의 사용이다. 원래 계구는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도구(행형법 14조)인데 평상시에 이것이 사용되면 실제는 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현재 행형법에는 계구의 종류로 포승, 수갑, 연쇄, 방성구 등 4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구는 그 사용목적과 사용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시행령 46조) 현실은 그 사용이 대단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사형선고자나 확정자에게는 거의 예외없이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고, 더욱 혁수정이라는 규정의 계구까지 사용하는 일이 많다.

국제인권원칙을 보면, 징벌에 관하여 최저기준규칙 등의 내용의 대상은 나름과 같다. 그 기관은 법률 또는 권한 있는 행정청의 규칙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최저기준규칙 29조). 이 기관은 징벌구성행위는 현실적으로 교도관의 지시, 명령의 위반이 되기 쉬운데 동지시 및 명령이 자의적으로 상용될 염려가 있어 징벌사유의 특정에 문제가 있다. 최저기준규칙 등은 징벌에 있어 위반사실의 고지 및 자기 변명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는 변명진술의 기회가 주어질 뿐 그것이 권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제인권규준에는 징벌에 대한 이의 신청(불복제도)제도가 있고, 그 실시기관이 법률 또는 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또는 상급기관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의 신청(불복)제도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규준에는 비인도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징벌은 절대 금지되고 있다. 체벌이나 암실구금은 물론이고 우리 제도에 있는 감식별도 유럽형사시설규칙은 삭제하고 있다. 구속구의 사용에 대해서는 최저기준규칙 등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구속구의 종류(연쇄 및 가(枷)의 사용금지), 사용목적(징벌로서의 사용금지) 및 그 제식에 대한 법정화의 요청등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유럽형사시설규칙은 구속구사용의 보충성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다. 즉, 동규칙 39조는 “자기 및 타인에게 위해 또는 재산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피구금자를 진무하는 다른 수단이 연쇄 및 법규에도 없는 혁수정의 사용은 국제인권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며, 더욱 사형수 일반에게 적용되는 구속구 착용은 국제수준에 비추어 상당히 낙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개선방향으로서, 첫째, 징벌의 자유인 규율위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지도록 해야 한다. 교도관의 자의적인 명령이 규율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징벌의 종류에서도 감식과 같은 비인도적인 징벌은 폐지해야 한다. 세째, 징벌절차에서 피구금자의 변명의 기회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네째, 징벌의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법무부등) 및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구속구(계구) 사용에서는 법규에도 없는 혁수정의 사용은 당장 폐지해야 하며, 연쇄와 같은 계구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계구의 사용이 징벌의 대체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마. 불복제도

행형시설내에서는 외부로 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하여도 그대로 묻히기 쉽고, 불만이 있어도 이의시정을 요구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형시설내에서 피구금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급기관과 당해 행형시설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한 불복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제도가 전무하다. 행형법 6조의 청원제도(수형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순열관에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시행령 4조)와 시행령 9조(소장은 1주일에 1회이상 수행자와 면접하도록 되어 있다)의 소장 면회제도가 있지만 이는 행형당국의 내부적인 제도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기대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제인권원칙을 보면, 최저기준규칙 36조는 우리 행형제도상의 청원, 소장면접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비롯하여 보다 다양하고 깊이있는 불복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36조 1,2항). 즉, 감독관에게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이나 교도관의 참여가 없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신청사항도 반드시 그에 대한 행형당국의 처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고 중앙교정당국, 사법관청에 의한 요구 또는 불복신청도 인정되고 있다(동조 3항 2). 그리고 이러한 불복신청은 부당하게 지연됨 없이 회답되어야 하는 권리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럽형사시설규칙

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불복신청권은 피구금자 본인에게 한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도 주어지며, 이들의 권리행사가 어려울 때는 본인 가족,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지식을 가진자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또, 신청이 거부되고 부당하게 지연될 때는 사법기관등에의 신청도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및 구제권한을 갖는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관은 독립한 제3의 기관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제도를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구름시설에 대한 사법기관등의 감독이 보장되고 있다(원칙4).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행형시설 내부 통제방법으로서 당해구금시설의장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복신청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지 않는 특별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변호가, 가족등 불복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에게도 신청자격이 있어야 한다. 둘째, 위의 제도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제기를 방해하지 않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 없이 신속히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전심절차 없이 신속히 제기될 수 있어야 한다. 부당한 처우는 가능한 빨리 제거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째, 행형시설의 외부통제 방법으로서 독립의 전문행형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이에 불복하는 제도도 고려할 만하다.

#### 바. 행형시설의 감시·감독

밀행주의에 입각한 종래의 행형제도와 현실에서는 행형시설을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지위에 있는 기관이 행형시설을 수시로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행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현실을 개선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행형시설의 감시·감독과 피구금자의 불복제도는 행형시설을 민주화시키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해방시키는 양대 축이다. 그러나 우리 행형제도는 행형시설을 객관적으로 통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행형법 5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행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형법은 판사 및 검사에 의한 시찰권 규정(5조 2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상급 관청의 감독작용은 아니다. 말 그대로 행형시설을 구경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제 인권원칙을 보면, 위 보호원칙은 관계법령의 엄격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에 직접관여하는 기관과는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기관에 의무를 부담하며 경험 풍부한 유자격자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방문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원칙 29의 1). 여기에서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이란 표현은 동 원칙의 심의과정에 의하면 감독하는 자의 신용성을 높이고, 피구금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기관의 의미는 “독립의 제3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피구금자는 위 방문자와의 의미는 “독립의 제3기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피구금자는 위 방문자와 “자유롭고도 완전하게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화할 권리를 갖는다(위 원칙 29의 2). 나아가 보호 원칙 4는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수감하에 있는 사람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는 사법기관등의 효과적인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에 의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 55조는 행형시설 및 행형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갖는 기관이 임명

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감찰관에 의한 감사제도를 요청하고 있고, 이 제도는 그대로 유럽형 사 시설규칙의 기본원칙 4에 순열제도로서 채용되고 있다. 더욱 유럽형사시설규칙은 감독제도에 있어 최저기준 규칙보다 질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즉, 동규칙 5는 독립의 제3기관에 의한 감독제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즉, “개인적인 권리의 보호 특히 피구금조치의 합법성은 사법기관 또는 피구금자를 방문하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부여된 중앙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은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관에 의한 감독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법무부의 순열(감독)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순열공무원과 피구금자의 면담은 자유스럽고, 비밀이 유지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법무부 이외의 기관(법원이나 감사원)에 의한 감독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째, 시찰권은 변호사회가 지명하는 변호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 \*토론자료 8 : 이브라히마 팔의 선언문 초안(유엔 사무부총장, 세계인권대회 사무총장) ; 신세계질서로의 탐구 - 유엔 세계인권회의

「세계인권회의」를 위한 사무총장 이브라히마 팔의 다음 인터뷰에서 이번 인권회의의 귀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팔 「세계인권회의」 사무총장은 세네갈의 외무 장관 고등교육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인권분야에도 중요한 공적을 남긴 학자이기도 하다. 이 인터뷰를 보면, 보편적 인권기준의 문제와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사이의 균등발전 문제 그리고 유엔의 민주성 및 효율성 문제가 생점화할 듯 보인다(출처 : The Earth Times, 93. 4. 22).

세계인권회의가 이 시점에서 절박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회의는 인권침해와 그 저지방법을 다루는 것이기에 중요하다. 인권은 우리 일상생활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의구속, 전제정권, 다수총과 소수총의 갈등은 그 나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다. 구유고연방에서 일어난 사태는 인근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정치적 안정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 회의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그래도 두번째 세계인권회의를 여는 데는 25년이 걸렸지 않는가?

첫 인권회의는 1968년에 있었다. 이번 회의개최를 결정한 것은 1991년인데 바로 동유럽에서의 커다란 변화와 아프리카에서 민주화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는 양진영으로 나뉘어진 세계의 정치적 분열이 주요 장애물이었다.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쟁점이 선진국과 발전도상국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서 지역별로 개최된 준비회의의 결과를 보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问题是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인권의 보편성과 나라마다의 특수성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나는 인권의 보편성이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 혹은 이슬람이나 기독교를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에 다른 갈등은 없을 것인가?

문제는 두 수준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인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단순히 국내문제가 아니라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 등 외부에도 걸쳐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국가차원에서의 평등한 경제적 기회 및 연대성으로 표현되는데, 때문에 선진국-후진국 사이의 갈등은 국제관계문제, 무역관계 경제관계의 민주화라는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 이런 갈등이 이번 회의에서 해소될 수 있을까?

갈등은 나쁜 조짐만은 아니다. 다른 갈등소지도 많다 - 사회그룹들간의 갈등, 국가간 민족간 갈등과 같이. 갈등은 모든 관계에 자연히 따른다. 갈등을 넘어서 나아가는 것, 상반된 흐름을 모아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 아시아지역회의(3.29 방콕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의견은?

아시아는 세계인구 절반이상과 그에 따른 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지역단위이다. 이 다양성 때문에 인권에 관한 아시아지역회의를 개최하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려웠으며 선언을 채택하는 데에도 힘들었다.

#### 이번 세계인권회의에서 제기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최종선언문이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선언문내용에 대한 협상이 준비위(PrepCom)에서 진행되고 회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물론 이 협상은 인권의 모든 측면 즉 원칙, 침해상황, 보호제도, 소수민족문제 등을 다룰 것이지만, 그중에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발전(development)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행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방법은 많다. 첫째로 정치적 방법이 있다. 둘째로는 광범위한 인권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따를 것이다. 다음으로 유엔의 인권보호기구들도 구조적인 개혁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인적 물적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유엔기구들간의 상당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팔은 세계인권회의 본회의 최종채택문서의 토론기초가 되는 문서를 세계인권회의 4차 준비위에 제출했다. 이 팔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활동방향이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원칙 부분 : 인권의 근본성 -유엔의 타 목적에도 인권보호와 증진은 근본적임.

유엔에서의 인권관계 활동의 우선성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차별없는 적용

#### 기존 국가체계의 존중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의 진밀한 상호관계  
여성, 소수민, 선주민, 아동, 취약층의 보호와 인권보장  
회원국 비준의 중요성과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운영  
인권보호, 교육, 보호제도의 실행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  
유엔 대응력 필요 :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력 필요.  
국가별로 법제화된 인권기구, 지역적 인권보호체계 권장  
민간단체 기여 인정, 언론의 공정한 정보제공 강조

#### < 활동 강령 >

##### 가. 유엔 기구상의 인권활동

- 유엔 고위급 관리와 전문기구들의 연례 인권관련 전략 및 정책 평가 회의.
- 유엔 인권프로그램내에 독립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보고체계가 필요.
- 인권협약의 비준을 강력히 권고.
- 유엔의 지역구조와 각 기관에 인권담당관을 배치.
- 인권분야 유엔내부 협의기구를 제안.
- 유엔인권센타의 본격적 활동 여건의 확보.
- 비정부단체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

##### 나. 평등, 존엄, 관용

- 소수층 권리선언의 실행절차를 인권위원회가 준비하도록 요구.
- 원주민 권리 선언문을 추진.
-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모든 유엔기구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
- 여아의 보호와 인권을 위해 모든 유엔기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여성권리규약에 선택의정서 채택 : 개별 제소제도의 신설 검토.

##### 다. 협력, 발전, 인권의 강화

- 자문봉사와 기술적 지원, 교육지원등의 강화, 전문가들 양성, 법제화 강조.
- 민주화와 발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지구전략 채택 노력.
- 비정부단체와 기층민중단체의 중요한 역할 인정.

##### 라. 인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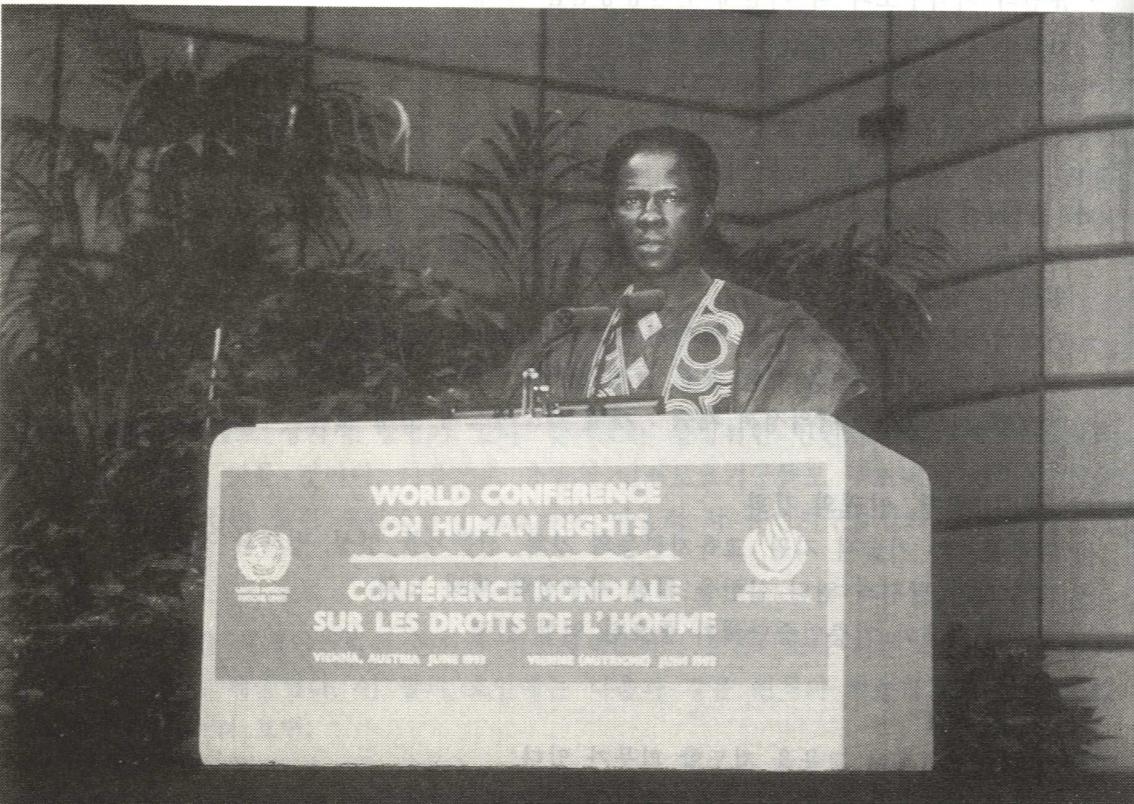
- 국가는 인권분야 교육을 지도할 의무가 있다.
- 인권교육은 민주화, 발전, 사회정의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 각국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 정부간 조직과 비정부단체들은 인권교육을 선도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마. 실행방법과 감시방법**

- 나라별 인권기준의 법제화, 각국 인권기구의 대표들의 매년 정례회의.
- 각 조약 감시기구의 지속적 발전, 제소절차 선택의정서 채택 권고.
- 국가별, 주제별 인권상황 보고자 제도의 확대 발전.
- 무력갈등상황에 대한 유엔의 대응력을 높임.
- 난민문제를 다룰 효과적 감시기구의 설립.
- 각 조약별 기구와 절차에 비정부단체들의 참여와 기여를 권장.
-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이 재판받고 처벌받도록 한다.

**바. 세계인권회의의 후속작업**

본 인권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고위급 전문가들의 회의를 1998년에 개최하도록 유엔총회에 제안한. 각국 정부, 유엔 각 기구, 지역구조의 대표들은 이 회의에 세부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번 세계인권대회의 서무총장인 이브라이마 팔(유엔 사무보총장)이 본회의에서 자신의 초안을 보고하는 모습

**\*토론자료 9 : 비엔나 국제 공동활동에 대한 원칙과 향후 인권관련 국제연대 운동에 대한 하나의 제안**

(발제 ; 노태훈)

**1. 인권 관련 국제활동의 의의**

-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전인류의 공통과제 해결에 동참.
- 국제활동의 성과를 국내운동에 적절히 활용함을 통해 국내 인권개선에 기여.

**2. 한국 인권운동에 있어서 국제활동에 대한 개괄적 평가****1) 성과**

- 파쇼적 억압 상황에서 국제 여론의 확대, 국제적 압력을 만들어 냄.
- 국내운동에 물질적인 지원을 부분적으로 확보했음.

**2) 한계 (시대적 상황, 조건과 깊은 연관이 있음)**

- 일방적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측면(특히 재정적)
- 단기적인 사고와 계획으로 대응(후속작업)
- 국제연대의 성과와 관계가 특정 개인이나 부문에 한정되었었기에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

**3. 한국 인권운동에서의 비엔나 대회, 공대위가 갖는 의의**

- 국제활동에 대한 문제제기, 관심 확대의 큰 계기
- 활동가들에 있어서 국제활동에 대한 훌륭한 훈련의 장을 제공
- 인권단체간 국제활동의 공동준비, 공동실천, 성과의 공유라는 긍정적 관점의 제기와 새로운 시도
- 인권 관련 국제활동의 공동 논의에 단초를 마련함.

**4. 비엔나 공동활동의 원칙**

- 각 단체의 개별적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공동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 자료, 정보의 분산 수집 - 전체적 공유의 체계에 기초한 활동을 전개한다.
- 공대위가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받는 제안들은 일단 보고하고 공동으로 결정한다.
- 기타의 것은 위 원칙에 준용한 활동을 전개하며, 회의체계를 통하여 결정한다.

### 5. 향후 인권 관련 국제 연대운동에 대한 하나의 제안

#### 1) 문제 의식

- 공대위는 한시적인 조직이다.
- 세계대회 이후 공대위의 성과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 한국 인권운동에 있어서 국제활동에 대한 관점, 방식, 체계등 제반의 것에 대한 인권 운동 내부의 공동의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 2) 제안

- 세계대회 이후 7월을 공대위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제반 정리작업 수행.
- 재정 및 자료등의 정리가 끝난후 보고회 및 해산식을 갖는다.
- 공대위 참가단체와 개인들이 인권관련 국제 연대활동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교환을 위한 회의 체계를 만든다.
- 구성원중 약간명으로 공대위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모아내고 이를 기초로 전체의 토론을 발전시킨다.

### \*토론자료 10 : 참가자 수첩

; 비엔나 대표단 활동일정 및 역할 분담, 자세와 규율

#### 1. 대표단 역할 분담

##### 1) 전기간 참여인원

공대위 18명, 기타 약 15명 총 33명

##### 2) 회의 체계

집행부 회의 - 매일, 전체회의 - 2-3일마다, 팀별 회의 - 수시로.

##### 3) 역할분담 구조

대표단장 : 홍성우, 천정배

대표단 집행부 : 대표단장, 팀장 4명, 총무, 총 6명

○ 회의담당팀 : 모든 공식 회의에 대한 책임, 참석

- 인원 : 천정배,

○ 진열/전시담당팀 : 사진전시, 비디오상영, 물품판매, 기타 전시

- 인원 : 남규선,

○ 공연/행진담당팀 : 노래공연, 풍물공연, 문화행진

- 인원 : 박래군, 정승진,

○ 섭외연대담당팀 : 섭외, 연락, 유대, 공동행사 1차 기획 등

- 인원 : 이대훈, 박희원, 곽은경, Scott,

○ 총무 : 업무총괄, 예산집행, 실무역할 배정, 규율담당

- 인원 : 노태훈,

##### \* 기타 실무

- 사진촬영, 영상기록 : 민사연

- 일지기록 : 곽노현

##### \* 별도 : 국가보안법 행사준비 팀 / 책임자 - 조용환

- 회의담당팀을 중심으로 추가지원을 받아 진행.

- 추가 인원 : C. Scott, 경험있는 교포 1-2인, 이대훈

\* 비엔나 현지에서 결합하는 추가 참석자들은 추후로 역할 분담한다.

#### 2. 자세와 규율

\* 대외 : 검소, 평등, 3세계 상황을 우선하여 타국 상황에 관심, 적극적 대화-교류, 적극 참여.

\* 대내 : 자발적 책임, 평등한 참여, 상호존중의 관계, 공동 판단-평가, 개인 기록과 성찰.

\* 대표단으로서의 공동행동 우선, 단 소속단체의 대표로서의 개별활동도 풍부하게.

\* 밥-찬 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에 대한 평등한 분담, 자발적 수행.

- \*세계 여러곳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공감 표시, 그에 알맞는 행동.
- \*국제활동의 견학 : 세력판도 및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를 분명히.
- \*유엔에 대하여 : 보고 배우는 겸손에서 정책을 갖고 비판하는 적극적 참여로.

#### <참가자 주요 참고사항>

1. 오스트리아 입국시 : 비자 필요 없으나, 초청장과 항공권은 개인 휴대 바람직.
2. 회의 장소, 시설, 교통
 

장소 주소 : AUSTRIA CENTER : A-1220 Wien, Am Hubertusdamm 6.  
교통 : 공항에서 전철 U1 노선 타고 Kaisermuhlen/Vienna Internation Center 역  
에서 하차, 혹은

6. 10-14간은 공항에서 직행버스(shuttle service) 운행, 약 6달러.

\*\* 도착 즉시 오스트리아 센타의 BIM 접수대를 찾아가 안내를 받을 것.

#### ○ NGO 병행 행사 장소

- Hall D : NGO 포럼시 극장식 1400석, 문화행사시 구조변경 600명 관람 가능.
- Hall G/H : 포럼시 200명용 두개로, 문화행사시 한 방으로 400명 수용.
- Hall I : 극장식 200명
- Hall K : 의회식 100명
- 그외 60-80명용 월샵 방 2개, 30명용 2개, 20명용 1개, 40명용 야외 2곳.
- 각 홀에는 고정 비디오 상영기 있음. (VHS, PAL-S용)
- 그외 이동용 비디오(90cm 영사막)사영기, 슬라이드, 오버헤드 영사기 있음.
- Hall H에는 필름 영사기가 설치될 예정. < 모든 전원 220 볼트 >
- 통역 :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어 제공됨.
- 회의시에는 5개 월샵 모두에서, 문화행사시에는 2 팀의 통역 제공됨.
- 6월 13-25간에는 Hall I/K, G, H 에서만 동시통역 제공됨.
- 많은 신청으로 인해 한 단체당 하루의 병행행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
- 컴퓨터, 프린트, 복사등을 직접 가져오거나 해오는 것이 바람직 함.

#### ○ 사무 및 기타 시설

- 지역별, 주제집단(여성, 아동 등)별로 사무실이 배정될 것임.  
우리는 아태지역 사무실.
- 각 사무실에는 컴퓨터(S/W = WordPerfect)와 수신전화가 있음.
- 유엔기구, 국가기구의 사무실은 별도. (U2 = 지하2층)
- 복사기, 국제팩스, 전화기도 구내에 설치되어 있음.
- 본회의에 참가자격이 있는 NGO는 “공식 회의층 Official Conference Level”에 있는 시설 사용가능. (우체국, 은행, 식당, 복사기, 기타 서비스)
- 음식과 음료는 식당(Catering)에서. 점식식사 약 6달러 (5천원)
- 기타 저렴한 식사는 오스트리아 센타 근처에 많음 (안내책자에 목록)

#### 3. NGO Fair

- 센타 옆에 있는 대형 천막 Marquee에서 개최될 것임.
- 행사신청한 단체는 탁자(60x140cm)과 전시대(2x2.5m) 사용 가능.
- 총 전시대 수는 181개. 6.8일 도착시부터 배정 시작.
- 예상 사용가격은 전시대당 15달러(13,000원).
- 기타 대형전시행사에 관한 준비사항은 추후 통보

#### 4. 등록

- 민간단체들은 비엔나 도착 이전에 참가자 명단, 참가희망 분과 Working Group, 그리고 도착 및 출발일정을 BIM에 떨히 팩스(43/1 504-4679)로 통보할 것. 6.8일부터 현지에서 직접 등록도 가능.
- 사진 등 정식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6.2일부터 현지 등록 가능.
- 본회의 참석자는 6.7일부터 직접 등록시 뱃지를 배부 받음.
- 포럼 전체회의 Plenaries 시 참가자가 너무 많을 경우 단체당 참가수를 제한할 수 있음.

#### 5. 문화행사

- 여러 즉흥적 행사 이외에도 준비된 계획이 있는데;
- 6.19-20 행사, 주제 - 적대보다는 축제를! (Festivity Instead of Hostility) 공연 중심의 문화행사, 접수 : 팩스 43/1 586-0131
- 6.10 저녁 : 영화 상영회 (영화는 본회의기간 계속 주위 공간에서 상영될 것임)
- 6.12 저녁 : 포럼의 뒷풀이로 “세계 음악” 콘서트
- 6.15 : 여성들의 여성을 위함 콘서트
- 그 외로 프로그램과 별도로 비엔나 시내에서 매일 저녁 연주회 등 있으나 유료 인듯. 관광은 모두 유료.
- 접수가 늦은 관계로 본회의 시작때에야 전체 문화행사 계획이 확정될 것임.

#### 6. NGO Forum 프로그램

- < NGO Forum > 이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병행행사가 없음
- |           |                                |
|-----------|--------------------------------|
| 6.7 ~ 6.9 | 운영 계획 조정, 접수, 지역별 회의, JPC 회의   |
| 6.10      | 포럼 소개, 기조 연설, 작업분과 배정, 작업분과 회의 |
| 6.11      | 기조 연설, 작업분과 회의                 |
| 6.12      | 작업분과 회의, 전체회의, 콘서트             |